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1월 | 2018/01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ISA 및 IPEA 신규 협정

2017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PCT 동맹총회(PCT 총회)에서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지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해당 기관들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WIPO 국제사무국(IB)과 체결한 합의서의 새로운 내용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국가 관청 및 정부간기구(IGO)들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 AT 오스트리아
- BR 브라질
- CL 칠레
- CN 중국
- EG 이집트
- EP 유럽특허기구
- ES 스페인
- FI 핀란드
- IL 이스라엘

- IN 인도
- JP 일본
- KR 대한민국
- RU 러시아
- SE 스웨덴
- SG 싱가포르
- TR 터키
- UA 우크라이나
- US 미국
- XN 북유럽 특허청
- XV 비세그라드 특허청

호주 특허청과 캐나다 특허청의 경우, 각 정부가 해당 관청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관한 2018년 1월 1일 발효된 신규 합의를 비준하기 위한 법률적, 헌법적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과 호주 특허청, 국제사무국과 캐나다 특허청장 간에 각각 체결되어 2018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던 합의서가, 1년 연장된 시점인 2018년 12월 31일과 해당 관청들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관한 신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 중 더 빠른 시기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합의서 내용이 변경되면서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D, E 내 여러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관한 내용도 변경되었는데, 해당 변경사항은 아래 "PCT 정보 업데이트" 단락에 나와있습니다.

PCT 총회에서 승인된 부속서 개정사항을 포함한 합의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access/isa_ipea_agreements.html

http://www.wipo.int/pct/fr/access/isa_ipea_agreements.html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PCT-PPH)

글로벌 PPH 시범사업에 비세그라드 특허청 참여

2018년 1월 6일, 비세그라드 특허청이 글로벌 PPH(GPPH)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총 참여 관청의 수가 25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에 따르면, 참여 관청 중 한 곳에 출원하는 경우 다른 참여 관청에서 발행한 자료(해당 시,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PCT 견해서, 또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제2장) 포함)를 토대로 출원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이전 심사에서 관청으로부터 특허성을 인정받은 바 있고, 나머지 관련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요청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에서는 통일된 자격요건을 적용하며,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PPH 네트워크를 간소화 및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PPH 시범사업 활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아래 PPH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jpo.go.jp/ppph-portal/globalpph.htm>

PCT 웹사이트 내 PCT-PPH 관련 페이지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되어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PCT 정보 업데이트

IL 이스라엘(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이스라엘 특허청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고 팩스번호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각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972-2) 5651 705, 5651 685

팩스: (972-2) 5651 616, 6468 070

이메일: pctoffice@justice.gov.il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IL) 업데이트)

IR 이란(위치, 주소)

(이란) 지식재산센터의 위치와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치 및 주소: No. 3, Phayazbakhsh Str.
Khayam Str.
Imam Khomeini Square
11146-78111 Tehran
Islamic Republic of Iran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IR) 업데이트)

JP 일본(조사/심사 제외 대상)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향후 조사/심사 제외 대상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으로서 해당 관청이 향후 조사에서 제외할 대상:

일본 특허법 규정에 의거한 특허 허여 절차에 따라 조사되는 국제출원 대상기술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인체의 치료방법, 그리고 진단방법을 제외한, PCT 규칙 39.1 (i) 내지 (vi)에 명시된 국제출원 대상기술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해당 관청이 향후 심사에서 제외할 대상:

일본 특허법 규정에 의거한 특허 허여 절차에 따라 조사되는 국제출원 대상기술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인체의 치료방법, 그리고 진단방법을 제외한, PCT 규칙 67.1 (i) 내지 (vi)에 명시된 국제출원 대상기술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및 E (JP) 업데이트)

NL 네덜란드(이메일)

네덜란드 특허청의 이메일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octrooicentrum@rvo.nl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NL) 업데이트)

RU 러시아(수수료)

지정 (또는 선택) 관청인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 납부하는 국내수수료 금액이 2017년 10월 6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허:

출원료:	RUB	3,300
심사료: ¹		
- 독립항 하나:	RUB	12,500
- 독립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독립항 당:	RUB	9,200
3차 연도 연간수수료:	RUB	1,700

실용신안:

출원료:	RUB	1,400
------------	-----	-------

¹ 국내단계 진입 시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1차 및 2차 연도 연당 연간수수료:..... RUB 800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RU)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호주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한국 특허청)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음의 관청들은, PCT 규칙 94.1의3에 따라 국제출원 파일에 포함된 서류의 사본 제공 시 납부하는, 2018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통지했습니다.

호주 특허청:	문서당:.....	AUD	50
오스트리아 특허청:	페이지당:	EUR	0.95
한국 특허청:	페이지당:	KRW	100

2018년 3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KRW
한국 특허청	AUD, CHF

상기 변경내용은 수수료표 I(b)에 나와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T, AU, KR) 업데이트)

정정사항: PCT 뉴스레터 2017/12호에 게재된 PCT 수수료표에, 2018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납부되는 조사료의 스위스 프랑(CHF) 등가액이 CHF 2,046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올바른 금액은 CHF 2,145입니다.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한국 특허청)

2018년 3월 1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인 한국 특허청에 납부되는 취급료 금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KRW 220,000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 (KR) 업데이트)

PCT 특별기사

WIPO 매거진 (2017/06호)에 실린 아래 기사에 대한 링크가 PCT 홈페이지 내 "PCT 특별기사"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news/pct_news.html

엠브라에르: 브라질의 선구적 항공기 제조거물

브라질의 엠브라에르는 전세계 항공기술의 선두주자다. 엠브라에르에서 기술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완더 멘치(Wander Menchik)은 혁신과 지식재산이 회사와 회사의 미래 목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내부자적 견해를 제공한다. 엠브라에르는 여러 국가에서 약 8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다수가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출원되었다.

“특허협력조약은 우리의 입지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일조하는 매우 유용한 틀입니다. 어떤 기술에 대한 특허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취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초기 견해를 제공하고, 또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에 관련된 전략적 사업 결정을 내릴 시간을 회사에 추가로 벌여주기 때문에 특히 유용하죠.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특허를 취득하는데 드는 발품은 덜어주면서 신기술에 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특허협력조약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각국 특허청을 선택해 직접 출원할 것인지(일명 "파리협약 경로")는, 발명의 본질과 관련 상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그리고 출원이 영향을 미칠 시장에 따라 결정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WIPO 매거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

WIPO 매거진 2017/06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pdf/2017/wipo_pub_121_2017_06.pdf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출원서 서식

2017년 7월 버전의 출원서 작성 샘플(PCT/RO/101)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러시아어도 추가 제공됩니다.

http://www.wipo.int/pct/ja/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http://www.wipo.int/pct/ru/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2017년 7월 버전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샘플(PCT/IPEA/401)이 일본어와 러시아로 추가 제공되며, 기존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버전도 각각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www.wipo.int/pct/ja/forms/demand/filled_demand.pdf

http://www.wipo.int/pct/ru/forms/demand/filled_demand.pdf

http://www.wipo.int/pct/en/forms/demand/filled_demand.pdf

http://www.wipo.int/pct/fr/forms/demand/filled_demand.pdf

http://www.wipo.int/pct/de/forms/demand/filled_demand.pdf

http://www.wipo.int/pct/es/forms/demand/filled_demand.pdf

유용한 도움말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 결과를 활용할 것을 요청하기

Q: 선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제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시 선 출원에 대해 행해진 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고 조사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출원인이 아래 나온 바와 같이 PCT 규칙 4.12 및 12의2.1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제조사기관(ISA)에 국제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국제조사기관, 다른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내관청이 수행한 선 국제조사, 선 국제형조사 또는 국내조사("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국제조사기관이 선조사 결과를 고려할 의무는 없습니다. PCT 규칙 41.1에 따르면, 선조사가 동일한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과 동일한 관청에서 행해진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 선조사의 결과를 가능한 범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조사가 다른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 이외의 국내(또는 지역)관청에서 행해진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결과를 고려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려면 아래 사항이 요구됩니다.

(1) 출원서에 국제조사기관이 선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웹기반 출원 도구인 ePCT를 이용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국제조사” 항목 아래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PCT-SAFE 및 다른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에도 이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서면 출원의 경우,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국제조사기관”), 특히 제7기재란의 계속(“선조사 및 분류 결과의 이용”)란의 체크박스(□)들을 참고하십시오. 선조사가 행해진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또는 지역관청)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출원서에 국제출원이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과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 또는 국제출원이 그 선출원과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선출원과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4.12(ii)에 의거).

(2) 나중에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도록, 수리관청에 선조사 결과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출원과 함께 출원 시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 또는 관청에서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조사보고서, 인용된 선행기술 목록 또는 심사보고서의 형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PCT 규칙 12의2.1(a)).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선조사가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에 명시된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행해지지 않고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과 동일한 관청에 의해 행해진 경우. 이때, 출원인은 선조사 결과의 사본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 수리관청이 선조사 결과의 사본을 준비하여 국제조사기관에 직접 송부하여 줄 것을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1번 항목)란에 있는 관련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PCT 규칙 12의2.1(b)).
- 선조사가 동일한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한 관청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PCT 규칙 12의2.1(c))
- 선조사 결과의 사본을 수리관청 또는 국제조사기관에서 허용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고(예를 들어 전자도서관을 통해) 출원인이 그러한 취지를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1번 항목)란에 표시한 경우 (PCT 규칙 12의2.1(d))

둘 이상의 선조사의 결과가 고려되기를 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각 선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PCT 및 다른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에서 추가 선조사들에 관한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면 출원의 경우, 각 선조사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용지에 기입해야 하므로, 추가 선출원 각각에 대하여 제7기재란의 계속란이 포함된 용지의 사본을 만들고 각 페이지에 "제7기재란의 계속란의 1번 항목의 계속 용지"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PCT 규칙 12의2.2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출원인은 요청서에 기재된 기한 안에 이와 함께 선조사와 관련된 다른 모든 서류들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출원의 사본(PCT 규칙 12의2.2(a)(i))
- 선출원이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선출원의 번역문(PCT 규칙 12의2.2(a)(ii))
- 선조사 결과가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선조사 결과의 번역문(PCT 규칙 12의2.2(a)(iii))
- 선조사 결과에 인용되어 있는 문헌의 사본(PCT 규칙 12의2.2(a)(iv))

그러나 아래의 두 경우에는 그러한 사본 또는 번역문들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조사가 동일한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과 동일한 관청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이거나 PCT 규칙 12의2.2(a)(i) 또는 (ii)에 규정된 사본 또는 번역문을 국제조사기관에서 허용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전자도서관을 통하거나 우선권 서류의 형식으로)(PCT 규칙 12의2.2(b))
- PCT 규칙 4.12(ii)에 따라 출원서에 국제출원이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설명 또는 국제출원이 출원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선출원과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PCT 규칙 12의2.2(c))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선출원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중복이 최소화되어 조사절차가 보다 효율화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과 관련해 납부된 조사료를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는데, 이는 PCT 조약 제16조제3항(b)에 따른, 해당 관청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해당 관청과 국제사무국 간 관련 협정에 제공된 한도와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PCT 규칙 16.3 참조)². 따라서 출원인은 먼저 조사료를 전액 납부하고,

² 작성 시점 기준, 미국 특허청은 국제조사보고서가 선조사의 결과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초한 경우에도 조사료를 반환하지 않음

국제조사기관이 어느 정도로 선조사의 결과를 이용 가능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나서 조사료가 출원인에게 반환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반환에 관한 세부조건은 관련 협정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pct/en/access/isa_ipea_agreements.html

또한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내 관련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appguide/>

본 유용한 도움말에 기술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시 선출원에 대해 행해진 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도, 상황에 따라, 선조사의 결과가 PCT 규칙 23의2.2(a)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어, 출원인이 PCT 규칙4.12에 따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수행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유용한 도움말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2월 | 2018/02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특허협력조약 발효 40주년

2018년 1월 24일은 특허협력조약(PCT) 제1장이 발효된 지 40년이 된 날입니다¹. 1978년 신규 발효된 특허협력조약은 당시 상대적으로 신생 조직이었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일궈낸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WIPO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전신 기구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무국(BIRPI)²의 회원국들에 의해 1970년 4월 26일 설립되었습니다³. 이후 특허협력조약은 꾸준히 발전하여 WIPO 최대 국제 지식재산(IP) 출원체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허협력조약은 처음에 13개국에서 발효되어, 1978년 6월 1일 PCT의 운영이 시작되었을 때 즉, PCT 수리관청들에서 PCT 출원을 수리하여 처리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5개국에서 추가로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PCT 체약국은 152개국입니다.

PCT조약 발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treaties/en/notifications/pct/treaty_pct_14.html

PCT 뉴스레터 한국어 및 중국어 발췌본 제공

이제 *PCT 뉴스레터*를 온라인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발췌본은 2003년부터 PCT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어 왔는데, 이제 비슷한 서비스가 한국 및 중국의 PCT 사용자들에게도 제공됩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장은 1978년 3월 29일 발효

2 The 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3 세계 지식재산의 날(World IP Day)이 4월 26일인 이유(참조: <http://www.wipo.int/ip-outreach/en/ipday/>).

발췌본은 모든 PCT 사용자와 관계된 내용과 함께, 해당 언어들이 사용되는 국가의 사용자와 특히 밀접히 관계된 내용도 제공합니다. PCT 세미나일정 및 PCT 수수료표, PCT 계약국 목록 등의 정보는 계속해서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발췌본은 *PCT 뉴스레터* 영문판이 마무리되고 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됩니다. *PCT 뉴스레터*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발췌본은 아래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http://www.wipo.int/pct/zh/newslett/index.html>

<http://www.wipo.int/pct/ja/newslett/index.html>

캄보디아, 유럽특허 효력 인정

유럽특허기구(EPO)와 캄보디아 정부 간 체결된 유럽특허의 효력 인정에 관한 신규 협정이 2018년 3월 1일 발효됩니다. 이날부터, EPO 회원국이 아닌 캄보디아에서도 유럽특허 및 유럽특허 출원(유럽특허에 대한 지정이 포함된 PCT 출원 포함)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효력이 인정된 유럽 특허 및 출원은 캄보디아 국내 출원 및 특허와 동일한 권리 및 법적효과를 부여받게 됩니다. 해당 협정의 체결로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유럽특허를 자국에서 인정해주는 국가가 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president-notices/archive/20180209.html>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information-epo/archive/20180209.html>

WIPO 우선권서류 온라인 조회 서비스

PCT 출원인은 인증사본을 직접 제공하거나 인증사본이 제공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신, 우선권서류를 위한 WIPO의 온라인 조회 서비스(DAS)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DAS에서 선출원 사본을 입수하여 우선권서류로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DAS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선출원이 출원된 관청이 DAS 기탁관청이어야 하고, 국제출원이 출원된 수리관청은 DAS 기탁관청이 아니어도 됩니다.

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

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는 2017년 12월 1일부로 DAS 기탁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했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해당 연구소는 기탁관청으로서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권서류를 DAS 오피스 포털(DAS Office Portal)을 통해 업로드하게 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BR>

인도 특허청

인도 특허청은 2018년 1월 31일부로 DAS 기탁관청 및 조회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했음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특허청은 기탁관청으로서, 2018년 1월 31일 이후 해당 관청에 출원된 PCT출원을 포함한 특허 및 산업디자인 출원서의 인증사본을, 출원인이 DAS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 우선권서류로 기탁합니다. 그리고 조회관청으로서, 우선권서류 제출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만료되지 않은 모든 출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제공된 우선권서류를 DAS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IN>

DAS 참여관청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

PCT 정보 업데이트

CA 캐나다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및 국제출원 사본 제출)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캐나다 특허청은, 국제출원의 공개에 앞서 국내출원을 출원하는 경우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출원서 번역문(해당하는 경우)과 국제출원서 사본이 요구됨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는 PCT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이 국내단계 조기 시작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CA) 업데이트)

FI 핀란드 (수수료)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인 핀란드 특허청(PRH)은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통지했습니다.

실용신안:

번역문 또는 사본 제출 지연에 따른 가산료: EUR 100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FI) 업데이트)

IB 국제사무국 (이메일 주소)

국제사무국의 이메일 주소 중 하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메일: pct.eservices@wipo.int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2 (IB) 업데이트)

KR 대한민국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들인 한국세포주은행(KCLRF)과 한국 미생물 보존센터(KCCM)의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세포주은행(KCLRF)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 연구소
우편번호: 03080

한국 미생물 보존센터(KCCM)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45
유림빌딩
우편번호: 03641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L 업데이트)

RU 러시아 (수수료)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인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은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또는 반환 조건의 변경을 통지했습니다. 출원서와 필요 서류가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경우 출원료, 심사료, 회복수수료가 30%씩 감면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RU) 업데이트)

SY 시리아 (관청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시리아아랍공화국 특허청의 명칭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팩스번호 중 하나가 삭제되었습니다.

관청명:	시리아아랍공화국 특허청 (Ministry of Internal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Protection (Syrian Arab Republic))
전화:	(963-11) 516 11 85
팩스:	(963-11) 516 11 44
이메일:	patentoffice@gov.sy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SY) 업데이트)

UZ 우즈베키스탄 (관청명,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및 홈페이지 주소)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의 명칭, 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및 홈페이지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관청명: 우즈베키스탄 특허청(Agency on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위치 및 우편주소: Mustakillik avenue, 59,
100000, Tashkent,
Uzbekistan

전화: (998-71) 232 50 50

팩스: (998-71) 233 50 05

이메일: info@ima.uz

홈페이지: www.ima.uz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UZ)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2018년 4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ZAR
오스트리아 특허청	ZAR
일본 특허청	KRW
대한민국 특허청	USD

상기 변경내용은 수수료표 I(b)에 나와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T, AU, JP, KR) 업데이트)

보충적 조사료 (유럽 특허청, 핀란드 특허청(PRH), 북유럽 특허기구(노르딕 특허기구, Nordic Patent Institute), 스웨덴 특허등록청,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 비세그라드 특허청)

2018년 4월 1일부터, 유럽 특허청, 핀란드 특허청(PRH), 북유럽 특허기구, 스웨덴 특허청,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 비세그라드 특허청에서 수행한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되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CHF 2,059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EP, FI, SE, TR, XN 및 XV) 업데이트)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원격학습과정: 특허협력조약 개론 (2018년 1월 제공)

PCT 조약에 관한 원격학습 기초과정(DL101PCT)의 한국어판을 포함한 PCT 공개언어 10개 언어 버전 모두가 정기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실시허가 가능여부 표시

신청(Licensing availability request)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제11.4장 신설) 작은 편집상의 수정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PCT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전반적 개요를 제공하며, 전적으로 자기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이해도 및 진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문항을 포함합니다. 전체 모듈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해당 과정에 대한 수료증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무료이며 수강을 원하면 아래 WIPO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https://welc.wipo.int/acc/index.jsf>

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01K#plus_PCT_101K (한국어판)

특허협력조약 발효 40주년

특허협력조약 발효 40주년에 관한 내용(“특허협력조약 발효 40주년” 단락 참조)을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아래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ar/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zh/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en/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fr/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de/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ja/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ko/40years/index.html> (한국어)

<http://www.wipo.int/pct/pt/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ru/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es/40years/index.html>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한 주의사항

신규 납부 요청서 확인

PCT 출원인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출처가 WIPO 국제사무국도 아니고 PCT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처리와도 무관한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해 그간 *PCT 뉴스레터*에서 여러 번 주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IPRS – Intellectual property register services”와 “IPTR – International Patent and Trademark Register”에서도 요청서가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서의 예시 및 PCT 사용자들이 WIPO에 제보한 기타 여러 예시, 그리고 추가 전반적인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한국어)

PCT 출원인 및 대리인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신속하게 모든 PCT 출원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무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PCT 조약 제21조제2항(a) 참조). 이러한 국제공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국제공개의 법적 효과에 관한 내용은 PCT 조약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및 대리인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각자의 조직 내 수수료납부 처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납부 요청을 함께 받았을 발명자에게도 전달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납부 요청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제사무국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 41-22) 338 83 38

팩스: (+ 41-22) 338 83 39

이메일: pct.legal@wipo.int

PCT 출원인, 대리인 또는 발명자(PCT 사용자)가 자국 정부나 소비자 보호 단체를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위의 링크에 나오는 사이트에는 민원제기 시 사용할 제안 문구 및 민원을 접수하는 정부 부처 및 소비자 보호 단체의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

PATENTSCOPE 검색시스템

영상 교육자료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 관한 짧은 영상 자료들이 올라간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tutorial.jsf>

해당 자료들은 PATENTSCOPE 사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조언도 제공합니다. 단 몇 분이면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번호, 이름으로 검색
- 복잡한 검색 질의(query) 생성
- 화학정보 검색
- CLIR을 통해 검색어의 유의어 파악 및 관련 번역어 획득
- 결과 목록 해석
- IPC 통계자료 활용
- 전체 PCT 공개출원 조회
- 특허등록포털(Patent Register Portal) 사용
- 특허 관련 동향 파악

- 공개된 서열목록 조회
- 계정 생성

유용한 도움말

수리관청이 국제조사기관(ISA)에 선조사의 결과를 송부하고,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의 요청 없이 해당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Q: PCT 뉴스레터 2018/01호에 나온 유용한 도움말에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시 선출원에 대해 행해진 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출원인이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출원인이 PCT 규칙 4.12에 따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또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서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A: 선조사 및 선분류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이 송부 받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7년 7월 1일, PCT 규칙 제23조의2가 새롭게 발효되고 PCT 규칙 제12조의2 및 제41조가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국제출원에 적용되는 해당 변경사항들로 인해 수리관청들은 특정한 경우,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서 선조사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는지와는 관계 없이, 선출원에 대한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청(ePCT, PCT-SAFE, 또는 기타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 사용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란의 항목1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리관청은 아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선출원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과 동일한 국내 또는 지역 관청에 출원되고 해당 관청이 선출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경우, 수리관청은 국제출원 시에 해당 관청에 제공되는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해야 함(국제조사기관이 그 전에는 그러한 사본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PCT 규칙 23의2.2(a))
- 국제출원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이 아닌 관청에 출원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수리관청이 아닌 상기 후자의 관청이 선조사를 수행하거나 선출원을 분류했으나, 수리관청이 해당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를 이용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전자도서관으로부터), 수리관청은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CT 규칙 23의2.2(c))

다만, 신설된 PCT 규칙 23의2.2가 자국의 관련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2016년 4월 14일 전까지)할 기회가 관청들에게 주어졌으며, 일부 관청은 상충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PCT 규칙 23의2.2(b)에 따른 상충 사실의 통지

PCT 규칙 23의2.2(b)에 따라 일부 국가의 관청은, 국제출원서과 함께 제출된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선조사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처럼 선조사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은, 국제출원이 출원된 수리관청이 PCT 규칙 23의2.2(b)에 따른 유보 조건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아래 국가의 수리관청에만 해당됩니다⁴:

DE 독일
FI 핀란드
SE 스웨덴

(PCT 유보, 선언, 통지, 상충 관련 목록 참조: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출원인은 상기 언급된 관청 중 한 곳에 출원하는 경우, ePCT, PCT-SAFE, 또는 기타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 사용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거나,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란의 항목2.2의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해당 수리관청에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 결과를 송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T 규칙 23의2.2(b)에 따른 유보 조건을 두고 있는 위의 3개국 중, 이런 식으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의 결과를 송부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일은 주로 독일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PCT 규칙 23의2.2(e)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바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선조사의 결과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PCT 규칙 23의2.2(e)에 따른 상충 사실의 통지

PCT 규칙 23의2.2(e)에 따라 일부 국가의 관청은, 출원인의 동의 없이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송부하는 일이 자국의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는 아래 국가의 수리관청에만 해당됩니다⁴:

AU 호주
CH 스위스
CZ 체코
FI 핀란드
HU 헝가리
IL 이스라엘
JP 일본
NO 노르웨이
SE 스웨덴

⁴ 2018년 2월 1일 현황

SG 싱가포르

US 미국

(PCT 유보, 선언, 통지, 상충 관련 목록 참조: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이는, 국제출원이 상기 언급된 국가 중 한 곳의 수리관청에 출원되고 출원인이 국제출원 시 해당 관청이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의 결과를 송부할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ePCT, PCT-SAFE, 또는 기타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 사용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거나,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 란의 항목2.3의 해당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리관청은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의 결과를 송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수리관청에 있어, 현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국제출원에 대해 선조사가 수행되었는데 해당 선조사를 현국제출원서에 선택된 국제조사기관과 다른 국제조사기관에서 행한 경우, 출원인은, ePCT, PCT-SAFE, 또는 기타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 사용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거나 서면 출원시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 란의 항목2.3의 두 번째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해당 수리관청이 선조사 및 선분류의 결과를 해당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출원이 하나를 초과하는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출원인이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를 수리관청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할 자격이 있고 그를 희망하거나 수리관청에 선조사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지 않도록 요청할 자격이 있고 그를 희망하는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선출원에 대해 관련 정보가 각 선출원 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ePCT, PCT-SAFE, 또는 기타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에는 관련 기능이 제공되나, 서면 출원의 경우에는, 제7기재란의 계속 란의 항목2.2 또는 2.3의 관련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제7기재란의 계속 란의 항목2의 계속 용지"라고 표시되어 각 우선권주장사항을 나열한 해당 페이지의 복제본을 출원서 서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의무와 관련하여, PCT 규칙 4.12에 따라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한 관청에 의한 조사가 행해진 선출원에 대해 국제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를 행함에 있어 해당 선조사의 결과를 가능한 만큼 고려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이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 또는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송부한 경우, 또는 해당 사본이 국제조사기관이 허용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이용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전자도서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PCT 규칙 41.2).

조사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과 관련하여, PCT 규칙 4.12에 따른 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시, 대부분의 국제조사기관은 조사를 행함에 있어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한 경우 조사료를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고 있으나, 국제조사기관이 PCT 규칙 41.2에 따라 선조사를 고려하는 경우, 즉 출원인이 해당 국제조사기관이 선조사를 고려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PCT 규칙에는 국제조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조사료를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음을 유념하십시오.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단계, 5.073B 내지 5.073D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 란의 항목2의 주석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ko/forms/request/ed_request.pdf (한국어)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3월 | 2018/03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2017년 PCT 출원

2017년에도 PCT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43,500건의 PCT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¹. 이는 2016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에 소재한 출원인들은 근 40년 전 PCT 운영이 시작된 이후 줄곧 1위를 고수하며 2017년 PCT를 통해 출원된 243,500 건의 1/4에 가까운 23.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 출원인들은 전체 PCT 출원의 20.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일본이 19.8%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전체 PCT 출원의 절반 가까이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졌으며(49.1%), 유럽(24.9%)과 북미(24.3%)가 각각 1/4씩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개 국가별 출원 총계 및 전체출원 대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56,624	23.3%
2. 중국	48,882	20.1%
3. 일본	48,208	19.8%
4. 독일	18,982	7.8%
5. 대한민국	15,763	6.5%
6. 프랑스	8,012	3.3%
7. 영국	5,567	2.3%
8. 스위스	4,491	1.8%

¹ 2017년 국내관청 및 지역관청에 제출된 PCT 출원이 모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지는 않았기에, 해당 총계와 하기 수치들은 잠정적인 값이며, 최종 수치들은 올해 중 추후에야 알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네덜란드	4,431	1.8%
10. 스웨덴	3,981	1.6%

기타 국가들의 출원 건수와 2016년 출원 대비 증감에 대한 내용은 아래 WIPO 보도자료 PR/2018/816에 나온 부속서 1(Annex 1)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8/article_0002.html

중국 통신업체들인 화웨이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와 ZTE 코퍼레이션이 2017년 각각 4,024건, 2,965건의 출원을 공개하며 2017년 최대 출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텔 코퍼레이션(미국)과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일본)가 차지했습니다. 상위 10위의 출원인들과 2017년 해당 출원인들의 이름으로 공개된 PCT 출원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웨이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Huawei Technologies Co. Ltd, 중국)	4,024
2. ZTE 코퍼레이션(ZTE Corporation, 중국)	2,965
3. 인텔 코퍼레이션(Intel Corporation, 미국)	2,637
4.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	2,521
5.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국)	2,163
6.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한국)	1,945
7. BOE 테크놀로지 그룹 컴퍼니 리미티드(BOE Technology Group Co., Ltd, 중국)	1,818
8. 삼성전자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Co., Ltd, 한국)	1,757
9. 소니 주식회사(Sony Corporation, 일본)	1,735
10. 주식회사 에릭슨(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Publ), 스웨덴)	1,564

상위 50위 PCT 출원인 목록은 상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부속서 2). 교육기관의 출원과 관련해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가 1993년부터 PCT 제도 최대 사용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위 10위는 미국 소재 교육기관들이 독식하고 있으나, 상위 20위는 미국 대학교 10곳과 아시아 대학교 10곳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의 출원에 관한 내용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부속서 3).

기술 분야별 PCT 출원과 관련해서는, 컴퓨터 기술이 총 PCT 공개출원 건수의 8.6%를 기록하며 PCT 출원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디지털 통신이 8.2%로 바짝 쫓았으며, 전기 기계, 장치 및 에너지(6.8%)와 의료 기술(6.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개출원의 기술 분야별 분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십시오(부속서 4).

2017년 출원 관련 최종 수치는 올해 중 추후에 *PCT 뉴스레터*를 통해 (PCT 연보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제기관회의(MIA)

제25차 PCT 국제기관회의가 2018년 2월 21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의장의 요약서(Summary by the Chair)와 작업 문서는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6027

의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품질 하위그룹(Quality Subgroup)의 회의 결과 및 추가 품질관리를 위한 해당 그룹의 권고. 세부내용은 의장의 요약서를 참고하십시오 (문서 PCT/MIA/25/13의 부속서 II).
- 국제사무국이 2018년 6월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에 발표하기로 한, PCT 실무그룹이 2010년 인준한 “PCT 로드맵”²의 검토 범위. 해당 검토를 통해, PCT 로드맵 권고사항에 따라 진행 중인 업무와 그 밖의 활동들이 PCT 제도의 발전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추가 개선 분야를 파악하게 됩니다.
- PCT 최소문헌에 관한 문서 두 개. 즉, 유럽특허청이 이끌고 있는 PCT 최소문헌 전담반(TF)의 업무 경과보고서(문서 PCT/MIA/25/4)와, PCT 최소문헌에 인도 전통지식 디지털 라이브러리(Indian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를 추가로 포함시키자는 인도 특허청의 제안서(문서 PCT/MIA/25/9).
- PCT 절차에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일본특허청의 제안(문서 PCT/MIA/25/3).
- 수수료 수입의 통화 환율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리관청 및 국제조사기관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PCT 수수료 거래 관련 도입 가능한 “그물구조(netting structure)”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경과보고서 (문서 PCT/MIA/25/5).
- 요약서의 품질 및 활용도를 개선하고 번역비용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출원 요약서 및 대표도면 내 단어 수에 관해 진행 중인 업무(문서PCT/MIA/25/11).
-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에 관한 WIPO 표준 ST.25에서 XML 기반의 WIPO 표준 ST.26로의 이행(문서 PCT/MIA/25/2).
- IP5 관청들 간의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에 대한 3차 시범실시를 위한 준비단계. 이 단계에서 시행단계 시작일을 곧 결정하기로 함(문서 PCT/MIA/25/7).
- 출원인이 정전이나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가용한 전자통신수단이 없어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문서 PCT/MIA/25/12).

각 기관은 최근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인, 수리관청, 국제기관 및 제3자들이 사용하도록 다양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문서 PCT/MIA/25/6). 각 기관은

² PCT 제도의 기능 개선을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

각자 ePCT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 중인 현황이나 ePCT를 통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하고, 또한 출원서 본문,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및 관련 서류에 있어 XML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이 크게 신장되고 특허정보의 품질도 개선될 것이라는 데 중지를 모았습니다. 각 기관은 또한, 특허출원 관련문서의 내용을 다른 참여관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청이 WIPO의 중앙집중식 조사 및 심사 정보 이용(WIPO CASE) 시스템에 제공관청으로 참여함으로써 실현될 업무 공조(work-sharing)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문서 PCT/MIA/25/8).

PCT 정보 업데이트

BG 불가리아 (수수료)

지정 (또는 선택)관청인 불가리아 특허청에 납부하는 하기 국내수수료 금액이 2017년 12월 12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허:

출원료:.....	BGN	40
공개료:.....	BGN	70

실용신안:

출원료:.....	BGN	40
-----------	-----	----

상기 수수료는 출원인이 발명자, 국립교육기관, 학문연구기구, 예산기구,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 50% 감면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BG) 업데이트)

BR 브라질 (위치 및 우편주소)

브라질 특허청(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의 위치 및 우편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치 및 우편주소: Rua Mayrink Veiga, 9, 6º andar
 Centro, Rio de Janeiro, RJ – CEP 20.090-910
 Brazil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BR) 업데이트)

EP 유럽특허청 (수수료)

유럽특허청은, 캄보디아에서의 유럽특허 효력 인정을 위해 지정 (또는 선택)관청인 유럽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통지했습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납부 가능한, 이날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한 해당 수수료 금액은 EUR 180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EP) 업데이트)

JP 일본 (전자적 형태의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출을 위한 전자매체의 종류)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 특허청은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시 해당 특허청이 인정하는 전자매체의 종류를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피 디스크나 CD-R이 허용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JP) 업데이트)

VN 베트남 (수수료)

지정 (또는 선택)관청인 베트남 특허청(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에 납부되는 수수료 통화 및 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원료:.....	VND 150,000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당 수수료:	VND 600,000
방식 및 실체 심사 신청 수수료:.....	VND 900,000
6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VND 40,000
조사료:.....	VND 600,000
공개료:.....	VND 120,000
도면 1개 초과시 1개당 가산료:	VND 60,000
6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VND 10,000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VN) 업데이트)

PCT 공개 일정 변동사항

2018년 5월 11일 공개

2018년 5월 10일 목요일이 WIPO 휴일인 관계로, 원래대로라면 이날 공개되어야 하는 PCT 출원 (및 모든 공문(Official Notices)(PCT 공보(PCT Gazette)))이 다음날인 2018년 5월 11일 금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의 완료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은 모두 국제사무국에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자정(중앙유럽 표준시(CET))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품질보고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단락 21.26 및 21.27에 따라,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은 해당 기관이 국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위해 시행한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에서 2017년도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quality/authorities.html>

유용한 도움말

국제출원시 납부하는 수수료

국제출원시 어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수리관청에 납부되는 수수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송달료:** 국제출원이 출원되는 수리관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송달료에는 수리관청이 수행하는 업무 즉, 국제출원서 접수 및 확인, 국제사무국에 기록원본 송부, 국제조사기관에 사본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송달료를 부과하지 않는 수리관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출원을 허용하는 일부 수리관청은 전자적으로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또 일부 수리관청은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small entity)가 제출한 출원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송달료는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국제출원 접수일과 송달료 납부일 사이에 송달료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이 접수된 날짜에 적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PCT 규칙 제14조 참조)

2. **국제출원료:** 국제출원료 금액은 PCT 체약국들(PCT 동맹)에 의해 스위스프랑으로 책정되며, PCT 규칙에 부속된 수수료표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출원서가 용지 30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매당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서열목록이 포함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국제출원료는 국제사무국의 수입으로서 수리관청에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통화로) 납부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무국의 다양한 업무 수행 즉, 국제출원 공개, 국제조사기관 대신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발행(PCT 제1장) (해당시), 출원인,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또는 선택) 관청에 다양한 통지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국제출원료 금액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지만(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동일), 다른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국제출원료는 국제출원서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국제출원 접수일과 국제출원료 납부일 사이에 국제출원료 금액(또는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다른 통화의 등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이 접수된 날짜에 적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PCT 규칙 제15조 참조)

3. **조사료:** 조사료 금액은 국제조사기관이 책정하며, 관할 국제조사기관 (또는 둘 이상의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료는 수리관청에 납부하며,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수행,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 작성 및 국제조사기관에 부여된 기타 업무 수행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수입이 됩니다.

조사료는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국제출원 접수일과 조사료 납부일 사이에 조사료 금액 (또는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다른 통화의 등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이 접수된 날짜에 적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PCT 규칙 제16조 참조)

납부 금액 또는 다른 통화의 등가액의 변동

송달료 금액은 보통 수리관청이 소재한 국가의 지역통화로 해당 수리관청에 의해 책정되며, 해당 관청의 관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은 금액 변동시 사전에 이를 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출원료와 조사료도 수리관청이 소재한 국가의 지역통화로 납부됩니다. 해당 통화가 국제출원료와 조사료가 책정된 통화와 상이할 경우, 전자의 통화로 납부되는 금액은 양 통화간 환율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가액은 “특정 수수료의 등가액 책정에 관한 PCT 총회의 지침”(2010년 7월 발효)에 따라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매년 10월, WIPO 사무총장은 관련 관청들과의 협의 하에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및, 해당시, 보충적 조사료와 취급료)의 새로운 등가액을 10월 첫 월요일의 우세 환율에 따라 책정하며, 조정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 해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스위스프랑(국제출원료) 또는 지정통화(조사료)와 다른 적용 가능한 소정통화 간 환율이, 금요일이 연속 네 번을 초과하여 지나가는 동안 마지막 적용 환율 대비 적어도 5% 상승하거나 적어도 5% 하락한 경우, WIPO 사무총장은 관련 관청들과의 협의 하에 상기 네 번의 금요일 이후 도래한 첫 월요일의 적용 가능한 우세 환율에 따라 해당 수수료들의 새로운 등가액을 책정합니다. 새로 책정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문(PCT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두 달이 지난 후 적용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시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 확인 방법

송달료,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금액은 아래 PCT 수수료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fees.pdf>

송달료와 국제출원료의 적용 가능 금액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사료의 적용 가능 금액은 부속서 D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PCT나 PCT-SAFE등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납부 수수료 금액은 관련 정보가 모두 입력되면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수수료가 정해진 금액인 경우, 납부 통화가 스위스프랑 등가액이 아닌 경우, 수수료 감면 조건의 적용이 용이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산정됩니다.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로 산정된 수수료들은 보통 정확하지만 그래도 수리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서식에 부속된 수수료 계산 용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 계산 용지의 기재요령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수료가 감면되는 경우

전자적인 형태의 국제출원을 수리할 준비가 갖추어진 수리관청에 전자적인 형태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³, PCT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PCT 규칙에 부속)에 의거하여, 국제출원료 총액이 출원에 사용된 전자적 형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면됩니다.

³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제7편 및 부속서 F, 또는 기본 공통 표준(Basic Common Standard)에 의거.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의 내용과 출원서가 모두 코드화된 문자 형식(character coded format)이 아닌 경우: 100 스위스프랑 (또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료 납부시 납부된 통화의 등가액)(항목 4(a) 참조)
- 출원서는 코드화된 문자 형식이고,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의 내용은 코드화된 문자 형식이 아닌 경우: 200 스위스프랑 (또는 등가액)(항목 4(b) 참조)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의 내용과 출원서가 모두 코드화된 문자 형식인 경우: 300 스위스프랑 (또는 등가액)(항목 4(c) 참조)

특정 저소득 국가의 국민 및 거주자이며 경우에 따라 여타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은, 출원인이 2인 이상이라면 모든 출원인이 필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출원료 (및 보충적 조사 취급료와 취급료)를 감면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수리관청인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에게는 송달료가 면제됩니다. 해당 저소득 국가들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ipo.int/pct/en/fees/fee_reduction_july.pdf

조사료와 관련하여, 일부 국제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특정 상황 중 하나에 해당시 조사료를 감면해줍니다.

- 특정 국가의 출원인
- 개인 또는 소규모 또는 초소규모 단체(small or micro entities)의 출원
- 국제출원이 특정 언어로 출원되는 경우

일부 국제조사기관의 다양한 조사료 감면조건에 관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를 참조하십시오.

수수료 납부 방법

ePCT나 PCT-SAFE 소프트웨어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관련 화면에서 선택한 수리관청에 따라 상이합니다. 추가 세부사항은 아래 PCT 온라인서비스 지원 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epct/support.html>
 (“ePCT Filing” 선택 후 “PCT fees and payment” 선택)

기타 방식의 출원의 경우, 수리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수수료 계산서 및 수수료 계산서 기재요령에 나와 있으며, 해당 수리관청에 문의해도 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 납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filing/modes.html>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수수료들도 국제단계에서 경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 (IB), C, D, SISA, E 내 관련 부분과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제113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PCT 출원인 및 대리인들이, 그 출처가 WIPO 국제사무국도 아니고 PCT에 따른 국제출원 처리와도 무관한 수수료 납부 요청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본 지면을 빌려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한 요청이 어떠한 등록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든 간에, 그러한 서비스는 WIPO나 WIPO의 공식적 공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PCT 출원 공개는 국제사무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이며, 국제출원료에 해당 공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서비스에 추가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4월 | 2018/04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 (DAS)

네덜란드 특허청

네덜란드 특허청은 2018년 6월 1일부터 DAS 기탁관청 및 이용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할 예정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NL>

DAS 참여관청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

국제출원의 전자 출원 및 처리

PCT 출원서 파일 내용을 공개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기능 신설

PCT 뉴스레터 2017/12호 2페이지에, 앞으로 출원서 원본에 색깔이나 회색 톤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고 PATENTSCOPE에서 출원서 원본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도입된 배경은, 국제출원서에는 일반적으로 색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색이 포함된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능의 도입으로, ePCT나 PCT-SAFE를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해당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출원서 본문(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중 적어도 하나)에 색깔이나 회색 톤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개출원서 첫 페이지에 안내문구가 삽입되어, 해당 출원서가 색깔이나 회색 톤이 포함된 상태로 제출되었으며 원본 파일을 PATENTSCOPE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단, 모든 국제출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100% 흑백 버전으로 변환되어 국제사무국에서 처리 및 공개됩니다.

흑백 변환으로 인해 원본서류 대비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서는 전용 미리보기 기능을 마련하여, 이후 국제사무국의 출원서 처리 및 공개에 활용될 파일 내용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 변환된 이미지의 내용이 본래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미리보기 기능은 국제사무국이 서류를 불러오고 공개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 서비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출원서 내용이 국제사무국이 공개할 모습과 근사하게 나타납니다.

해당 미리보기 기능("PDF Conversion Checker")은 아래 "출원서 본문 변환기(Application Body Converter)"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pctdemo.wipo.int/DocConverter/pages/pdfValidator.xhtml>

페이지 상단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기타 유용한 기능과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미리보기 기능이 ePCT에서는 예전부터 포함되어 직접 제공 중인데, 출원서 본문을 ePCT에서 업로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수리관청(이스라엘 특허청 및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PCT-SAFE 업데이트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2018 년 4 월 1 일, 버전 3.51.081.257)이 출시되어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

해당 PCT-SAFE 신규 버전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상기 웹페이지에 있는 "출시 정보(Release notes)"와 "신규 사항(What's new)"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PCT 정보 업데이트

KR 대한민국 (전자적인 형태의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의 제출을 위한 전자매체의 종류)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특허청은, 전자적인 형태의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출시 사용되는 해당 특허청이 인정하는 전자매체의 종류를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피 디스크, CD ROM, CD-R, DVD 또는 DVD-R 이 허용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KR)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일본 특허청)

2018 년 6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증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EUR
일본 특허청	KRW, USD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U, JP) 업데이트)

기타 업데이트 사항

다음 업데이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2018/article_0005.htm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E 벨기에 (홈페이지 주소, 국가 안보 관련 조항)

CA 캐나다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필요한 번역문 내용, 국제출원서 사본 제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특수 요건)

CN 중국 (수수료)

EP 유럽 특허청(EPO) (수수료, 국제조사 허용 언어)

GB 영국 (수수료)

NL 네덜란드 (전화번호)

NO 노르웨이 (관청명, 우편주소)

SG 싱가포르 (수수료)

US 미국 (팩스번호)

유용한 도움말

특허 보호 대신 실용신안 보호 신청하기

Q: PCT 출원을 했는데, 제 발명에 대한 보호를 여러 나라에서 받고 싶으면서도 비용 또한 최소로 하고 싶은데요. PCT 출원서에 실용신안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또 특허 보호에 비해 이러한 형태의 보호가 취득 비용이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용신안 보호가 특허 취득 대비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A. 실용신안권은, 보호를 받는 발명¹을 실용신안권자의 승인 없이 타인이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한된 기간 동안 방지하도록,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발명을 보호합니다. 이런 면에서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아래 나온 바와 같이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실용신안을 통한 발명의 보호는 특정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부 국가는 실용신안권과 유사한 권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를 "소 특허(petty patent)", "혁신적 특허(innovative patent)", "단기 특허(short-term patent)", "실용 혁신(utility innovation)" 또는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라

¹ (역주) 대한민국 실용신안법에서는 그 보호의 대상을 발명 대신 고안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본 문서에서는 영어 원문과의 일치 및 서술의 편의상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부릅니다.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 "실용신안(권)"이라는 용어는 실용신안권 및 기타 유사 권리를 모두 포괄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에 비해 실용신안권은 취득을 위한 관청 수수료가 낮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 전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전에 납부하는 심사료가 없고, 그 등록 절차도 특허 취득에 비해 단순하고 빨라 평균적으로 6 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록실용신안 보호기간 동안 유지 또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도 일반적으로 특허보다 저렴합니다.

특허보다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저렴하고 등록 절차도 더 쉽고 빠르지만, 기술 발명의 보호 방법 결정시 실용신안과 특허 간 다음과 같은 기타 차이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 실용신안 보호 취득 요건은 일반적으로 특허보다 덜 까다롭습니다. 특허에서 신규성 요건은 언제나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나, 실용신안의 경우 국내 수준에서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보성(또는 비자명성) 요건은 실용신안의 경우 훨씬 더 기준이 낮거나 아예 부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 보호는 특허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작은 개량 등 점진적 성격의 혁신에 대해 가능합니다.
-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특허보다 짧고 국가별로도 상이합니다(연장이나 갱신 가능성 없이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 단, 소수 관청의 경우 10년 초과).
-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이 특허와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출원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가 특정 기술분야에 대해서만 취득 가능하거나, 공정이나 화학물질이 아닌 장치나 기기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 가능하거나, 혹은 두 제한이 모두 다 적용됩니다. 실제로, 실용신안 출원 자격이 있는 대상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며, 특정 지정 (또는 선택) 국가에서 실용신안 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면, 해당 국가의 국내 대리인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호 대상이 이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신안 보호를 제공하는 다양한 국가의 실용신안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지식재산법률(IP legislation)"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wipolex/en/>

결론적으로, 실용신안 보호는 취득과 유지가 더 저렴하고, 실용신안권 취득 요건도 종종 덜 엄격하며, 등록 절차도 실체심사가 없어 보통 더 쉽고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용신안 보호가 항상 특허 보호보다 더 나은 대안인 것은 아닙니다. 실체심사의 결여는 등록된 실용신안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확실성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발명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 보호로는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려면 해당 국가의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의 구체적 특징들을 경우별로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실용신안 보호와 특허 보호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허여를 기다리는 동안 실용신안권이 빨리 취득될 수 있으므로, 특허 보호의 보완책으로 실용신안 보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 출원(또는 실용신안)을 특허 출원(또는 특허)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FAQ가 포함된 유용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atents/en/topics/utility_models.html

실용신안 보호를 제공하는 PCT 관청들에 대한 추가 내용과 국제출원에 있어 이러한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번 *PCT 뉴스레터*(2018/05 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5월 | 2018/05호

PCT 웨비나(Webinar) 안내

WIPO에서는 온라인 세미나 서비스인 웨비나를 통해 원격으로 PCT 관련 정보 및 강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한국어로도 PCT 웨비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PCT 뉴스레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6월에 한국어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PCT 국제출원 개요 및 출원시 고려사항

* 신청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6월 웨비나는 PCT 관련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구성될 예정이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8. 6. 26. 오후 4시~5시 (한국 시간)

사전 등록: 인터넷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6197917750090234115>)이용

이용 방법: 등록 후 안내 메일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정해진 시간에 접속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나 이어폰 등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비 필요)

안내 및 문의 (한국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PCT 법무국 (taegeun.kim@wipo.int)

* WIPO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관련 내용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WIPO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KR 대한민국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등록된 변리사 또는 법정대리인이면 누구나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을 상대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KR) 및 국내편, 요약 (KR) 업데이트)

기타 업데이트 사항

다음 업데이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P 유럽특허청 (수수료)

IS 아이슬란드 (수수료)

MK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E 스웨덴 (수수료)

TR 터키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캐나다 특허청(정정사항), 브라질 특허청, 중국 특허청(SIPO))

미국 특허청: 2018년 3월 2일 및 21일 휴무

미국 특허청(USPTO)은 기상 악조건으로 인해 2018년 3월 2일 금요일과 21일 수요일 양일간 대민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미국 특허청에 도달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날짜 중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2018년 3월 5일 월요일과 3월 22일 목요일에 각각 만료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patent-related-notices/patent-related-notices-2018>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실무그룹 회의 자료

201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1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를 위해 준비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6429

PATENTSCOPE 검색시스템

인도 국내 특허문헌

이제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인도의 국내 특허문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도움말" 탭 하단의 "데이터 수록범위" 참조). 해당 특허문헌에는 현재 470,000여 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PATENTSCOPE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또는 지역 관청의 수가 52개가 되었습니다.

PCT 특별기사

올해 세계 지식재산의 날¹의 주제인 "변화의 동력: 혁신과 창조의 여성들"에 따라, *WIPO 매거진* 최신호(2018/2호)에서는 전세계에서 매일같이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 수많은 뛰어난 여성 중 몇 명의 시각과 경험을 다루었습니다.

양조에서 생물제제까지: 세계 보건의 혁신을 이끄는 키란 마줌다르 쇼 인도 바이오콘 회장

인도 최대의 완전 통합형, 혁신 추구형 생물약제학 기업인 바이오콘(Biocon)사의 키란 마줌다르 쇼(Kiran Mazumdar-Shaw) 회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 의료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식재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지식재산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혁신을 도입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PCT는 바이오콘처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한 번의 국제특허출원으로 150여 개의 국가에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비용대비 효과가 큰 선택안이죠. 또 국내출원을 하는 비용이 18개월간 연기되기 때문에 목표 시장에 대한 특허취득 및 상품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라고 키란 마줌다르 쇼 회장은 설명합니다.

¹ 매년 4월 26일

보다 쉬워진 영아 식사

영국의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맨디 하버만(Mandy Haberman)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성공에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국제시장에서 자사 상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PCT가 유용한 선택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용물이 새지 않는 영유아용 컵 Anywayup® 컵에 대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안정적인 특허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PCT를 통해 목표 시장들에서 특허출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고, 제 브랜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를 주는 것으로도 수익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성과 국제특허제도: 고무적인 추세

해당 기사에서는 여성 발명가들의 PCT 사용 추세를 살펴보면, "특허 및 성(gender)에 관한 WIPO의 자료를 보면, 세계 모든 지역에서 특허청에 처음 출원 당시 출원서에 적어도 한 명의 여성 발명가의 이름이 올라간 PCT 출원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해당 자료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현 속도대로라면 국제특허제도 활용에서의 성 평등(gender parity)이 2070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WIPO 매거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

WIPO 매거진 2018/2호(2018년 4월)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pdf/2018/wipo_pub_121_2018_02.pdf

유용한 도움말

실용신안 보호를 제공하는 지정관청을 확인하는 방법 및 국제출원에 대해 실용신안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

Q: 국제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실용신안 보호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지정국이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또 해당 국가에서 제 출원이 실용신안 출원으로 처리되도록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지난 달 "유용한 도움말"(PCT 뉴스레터 2018/04호)에서 실용신안 보호의 장단점을 다룬 바 있습니다. 실용신안 보호는 85개² PCT 체약국에서 제공 중인데, 특정 국내관청에서 발행된 국내실용신안이나,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API) 또는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의

² 해당 수치는 "실용신안"에 한정된 것으로, 기타 유사한 종류의 보호를 제공하는 관청들은 포함되지 않음.

아프리카 지역관청들에서 발행된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관청에서는 특허에 대한 대안으로서만 실용신안 보호를 제공하지만, 많은 관청에서 출원인이 특허 보호에 추가적으로 실용신안 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특허의 허여를 기다리는 동안 실용신안 보호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보호를 취득할 수 있는 PCT 계약국에 관한 정보는 아래 자료의 "PCT 계약국에서 PCT를 통해 제공 가능한 보호의 종류(Types of Protection Available via the PCT in PCT Contracting States)"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texts/pdf/typesprotection.pdf>

실용신안 보호 신청과 관련하여, PCT 규칙 4.9(a)에 따르면, PCT 출원서(PCT/RO/101)의 제출은, **모든 종류의 보호의 부여에 있어**(해당 시, 지역 및 국내 특허의 허여 포함), 국제출원일 당시 PCT에 구속되는 모든 계약국의 지정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특허 대신(또는, 해당 시, 특허에 추가적으로) 실용신안 보호(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대안적인 보호³)를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제단계에서 출원인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국제단계에서 특정 종류의 보호를 신청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단, 특정 국가의 지정에 있어 특정 종류의 보호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출원인이 국제출원이 추가특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PCT 규칙 4.11(a)(i)), 또는 선출원의 계속출원 또는 일부계속(CIP)출원(PCT 규칙 4.11(a)(ii))을 위한 출원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특정한 표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국제출원이, PCT 조약 제43조⁴가 적용되는 지정국(또는 선택국)에서 특허 취득이 아닌 실용신안 취득을 위한 출원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거나, PCT 조약 제44조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보호(이러한 보호가 가능한 한도에서)를 위한 출원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인은 국내단계(또는 지역단계) 진입을 위해 PCT 조약 제22조(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할 때 해당 관청에 출원인이 선택한 보호의 종류를 표시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PCT 규칙 49의2.1(a) 참조). 그러나, 그 시점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일부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은 출원인이 선택한 보호의 종류를 나중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PCT 규칙 49의2.2(b)). 두 종류 이상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종류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지를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49의2.1(b) 참조).

출원인이 PCT 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때 실용신안 보호를 신청하기를 희망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관청은 출원인의 국제출원을 특허를 위한 출원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그와 같은 명시적인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납부한

³ 본 "유용한 도움말"의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소 특허(petty patent)", "혁신적 특허(innovative patent)", "단기 특허(short-term patent)", "실용 혁신(utility innovation)",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 등 기타 유사 권리들로 바꿔 쓸 수 있음.

⁴ PCT 조약 제43조에서, 국제출원이, 특정 종류의 보호를 국내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러한 보호를 부여 받기 위한 것이라는 출원인의 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국내수수료가 실용신안을 위한 국내수수료에 상응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납부는 그 국제출원이 실용신안을 위한 출원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출원인의 희망의 표시로 간주되고 지정관청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PCT 규칙 49의2.1(e)).

일부 관청은 실용신안을 위한 출원에 있어 국내단계 진입 신청을 위해 사용 가능한 특정 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식의 사용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PCT 규칙 49.4에 따르면 PCT 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때 출원인이 반드시 국내서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서식의 사용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한 가지 종류의 보호만 신청하더라도, 많은 관청에서 출원인이 나중에 다른 종류의 보호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PCT 규칙 49의2.2(b) 참조)(예를 들어, 실용신안출원(또는 등록실용신안)에서 특허출원(또는 특허)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 다만, 이때 특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출원인이 출원 변경을 신청하지만, 일부 관청은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출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보호 신청과 관련한 지정관청 별 구체적 요건, 그리고 보호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국내편 관련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appguide/>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6월 | 2018/06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특허협력조약(PCT) 운영 40주년

2018년 1월 24일은 PCT 제1장이 발효된 지 40주년이 된 날입니다(*PCT 뉴스레터* 2018/02호 참조). PCT가 발효되고 4개월 여만인 1978년 6월 1일에 PCT 운영이 개시되면서 PCT 출원 및 국제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18년 6월 1일 WIPO 본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은 국제특허제도인 PCT의 운영 40주년을 맞아 PCT를 성공적인 국제협력의 드문 표본이라고 말하며, PCT의 효율적 실행에 있어 관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래 링크에 사무총장의 발언이 담긴 3분짜리 짤막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ko/40years/index.html>

PCT는 운영 개시 이후 커다란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첫 6개월간은 PCT에 따른 국제출원이 459건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나 2004년 후반까지 1백만 건의 출원이 이루어졌고, 다시 13년 가까이가 지난 2017년 2월에는 3백만 번 째 PCT 출원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WIPO의 PATENTSCOPE 데이터베이스에는, 매주 평균 약 5,000건의 PCT 출원이 공개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PCT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국제출원 340만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PCT 출원 건수는, 세계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의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무려 243,500건의 PCT 출원이 이루어져 2016년 대비 4.5%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PCT의 탄생 이후부터 미국에 기반을 둔 출원인이 매년 최다 PCT 출원을 기록해왔는데, 2017년 한 해에만 57,000건에 가까운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국가들의 PCT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 출원인의 PCT 사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2003년부터 10%를 웃도는 연간 PCT 사용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7년에는 2번째 최다 사용자에게 올랐습니다.

PCT 체약국 수는 1991년 50개국, 1999년 100개국, 그리고 현재 152개국으로, 오늘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PCT제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PCT에는 지난 40년간 아래와 같은 다른 많은 중요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 서면 출원 및 처리에서 전자 출원 및 처리로 변경
- 공개언어 수 5개에서 10개로 증가
- 국제기관 수 5개에서 23개로 증가
- 국내단계 진입 건수 1995년 100,000건 미만에서 2017년 615,000건으로 증가

PCT 규칙 및 규칙에 부속된 수수료표 개정

2017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49차 PCT 동맹총회 회의에서, 2018년 7월 1일부로 발효될 PCT 규칙 개정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문에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PCT 규칙 4.1(b)(ii) 및 41.2(b): 47차 PCT 총회(2015년 10월) 및 48차 PCT 총회(2016년 10월)에서 각각 채택된, PCT 규칙 12의2 및 23의2의 개정 내용에 따라 인용 규칙 번호가 수정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문서 PCT/WG/10/5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wg/10).
- PCT 수수료표: 수수료표 5번 항목에 기재된 수수료 90% 감면은, 본인의 권리로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만을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화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문서 PCT/WG/10/8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wg/10).

본지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섹션에서 상기 개정사항을 기술한 PPT 자료 확인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PCT 규칙 및 수수료표 통합본은 아래 페이지 우측에서 영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ePCT 업데이트

ePCT 신규 버전(4.3)이 2018년 5월 23일 출시되었습니다. 아래에 신규사항 중 일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을 위한 ePCT

ePCT에 아래의 신규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외부 서명*: 많은 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생성된 신규 기능으로, 승인받은 서명인은 ePCT에 접속하지 않고도, ePCT에서 작성 중인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¹. 추가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09>

- *접근권한 관리 추가 개선*: 접근권한을 수정할 때, eHandshake를 이용해 개별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식 외에, 이미 존재하는 접근 권한 그룹으로 기존의 접근 권한 그룹을 대체하거나 기존 접근 권한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이 없는 주소*: 주소록을 포함, ePCT에 주소를 기재할 때 이제는 도로명 주소가 해당사항이 아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전에는 도로명 입력이 필수였음).
- *ePCT를 통한 PCT 규칙 4.17(i)에 따른 선언들*: 이제 여러 발명가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출원서 언어가 영어로의 음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즉,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중 하나인 경우), PCT 규칙 4.17(i)에 따른 선언들도 음역으로 작성됩니다(본 사항은 적절한 시점에 다른 선언들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음).
- *ePCT 업로드용 PDF 파일 준비 요령*: 영상 교육자료("지원(Support)" 페이지 내 제공)의 바로가기 링크가 ePCT 내 "서류/Documents" 섹션에 추가되었습니다.
- *새로운 문서 유형*: 국제예비심사기관 (IPEA)에 제출하는 문서들 목록에 "IPEA의 견해서에 대한 공식답변(Formal response to the Written Opinion of the IPEA)" 문서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캡처화면을 포함한 상기 변경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와 ePCT 최신 버전에 포함된 다른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는, PCT 온라인서비스 지원 페이지의 "PCT 출원인 대상 변경사항(What's new in ePCT for applicants?)"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epct/support.html>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국제기관을 위한 ePCT

ePCT 최신 버전(4.3)에는 관청 사용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관청 관련 사항 및 개선사항이 몇 가지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버전은 아래의 신규사항을 포함합니다.

- 관청 심사관들에게 국제출원 및 관련 업무 배포
- 조사 및 심사 보고서 작성에 표준 문구(standardized clauses) 및 인용문헌 관련 조회(lookup) 기능 적용
- PCT-SAFE 또는 부속서 F에 따른 기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출원된 신규 국제출원을 ePCT로 불러오기

¹ 해당 사항은, 수리관청인 미국 특허청에 출원 시에는 ePCT에서 첨부서류가 허용되지 않아 이미지 서명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국제출원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 IP5 관청들 대상 협력심사 기능 관련 중요 개선점

관청 대상 상기 사항 및 ePCT 시스템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아래 PCT 사이트의 "기관 및 관청을 위한 ePCT(ePCT for Authorities and Offices)"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epct/epct_office_guideline.html

출원인 및 관청을 위한 ePCT의 신규사항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pct.eservices@wipo.int

전화: (+ 41-22) 338 9523

또는 "Contact Us"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 (DAS)

브라질 특허청 및 덴마크 특허청

브라질 특허청과 덴마크 특허청은 국제사무국에, 각각 2018년 4월 1일 및 2018년 6월 1일부로 DAS 이용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했음을 통지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BR>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DK>

DAS 참여관청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

캄보디아에서 중국 특허 등록

중국에서 허여된 특허(PCT 출원을 기초로 허여된 특허 포함)의 소유자는 캄보디아에서 해당 중국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실용신안이나 산업디자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mih.gov.kh/File/UploadedFiles/4_18_2018_23_29_19.pdf

<http://english.sipo.gov.cn/news/officialinformation/1122884.htm>

캄보디아에서 중국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출원서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mih.gov.kh/File/UploadedFiles/4_19_2018_0_15_46.pdf

PCT 뉴스레터 7월호 및 8월호 통합

PCT 뉴스레터 다음 호는 7-8월 통합호로 8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본 6월호와 7-8월 통합호 발행 사이에 PCT 사용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PCT 관련 소식이 생기면 PCT 이메일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매월 PCT 뉴스레터가 발행될 때 이를 PCT 사용자들에게 통지하거나 필요 시 그때그때 중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아직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3.wipo.int/newsletters/en/#pct_newsletter

7-8월 통합호 발행 전에 PCT 세미나 일정이나 PCT 수수료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 내용은 아래에 각각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http://www.wipo.int/pct/en/seminar/seminar.pdf>

<http://www.wipo.int/pct/en/fees.pdf>

PCT 공개 일정 변동사항

2018년 9월 7일자 공개

2018년 9월 6일 목요일이 WIPO 휴일인 관계로, 원래대로라면 이날 공개되어야 하는 PCT 출원(및 모든 공문(Official Notices)(PCT 공보(PCT Gazette)))이 다음날인 2018년 9월 7일 금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의 완료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은 모두 국제사무국에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자정(중앙유럽 표준시(CET))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WIPO 본부에서 PCT 세미나 고급과정 개최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2018년 9월 17일과 18일에 제네바에 소재한 WIP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특허 및 기술 섹터의 경험많은 직원들이 진행하며, 출원, 조사 및 심사, ePCT, 국내단계 진입, 최근 및 향후 변동사항을 다루는 세션들을 제공합니다. 해당 과정은 특허관리인, 법률사무소 직원(paralegal) 및 기타 PCT 제도에 친숙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등록 방법 및 추가정보를 위한 링크는 조만간 PCT 세미나 일정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한국 특허청)

2018년 8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유럽 특허청.....	SEK
한국 특허청.....	EUR

상기 변경내용은 수수료표 I(b)에 나와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U, KR) 업데이트)

기타 업데이트 사항

다음 업데이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E 아랍에미리트 (관청명, 위치 및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AU 호주 (전화번호, 필요한 번역문의 내용)

CO 콜롬비아 (수수료)

ES 스페인 (국제공개 후 임시 보호)

MX 멕시코 (수수료)

PL 폴란드 (대리인 관련 요건,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특수 요건)

SE 스웨덴 (전자적 형태로 국제출원 제출)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파워포인트 PPT 자료

2018년 7월 1일부로 발효될 PCT 규칙 개정사항을 기술한 PPT 자료를 아래에서 각각 한국어 및 영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ko/texts/ppt/2018changes.pptx>

http://www.wipo.int/pct/en/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

세미나 자료

PCT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영문 세미나 자료가 2018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PCT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에 업데이트 및 업로드 되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seminar/basic_1/document.pdf

WIPO 번역 툴 "WIPO Translate"

한국 특허청, 특허청 최초로 자체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에 WIPO 번역 툴인 WIPO Translate 통합 예정

한국 특허청(KIPO)은 WIPO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PCT 관청 중 처음으로 WIPO Translate를 자체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WIPO Translate는 PATENTSCOPE에 사용된 기술로, 최첨단 인공지능경망 기반 기계번역을 통해 매우 기술적인 특허 문서들을 제2언어로 번역해 내면서도, 보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과 유사한 문체나 구문을 구현합니다. WIPO Translate는 기존의 기술에 기반한 특허 번역 툴들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타 웹 기반 번역 제품들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WIPO Translate는 PCT 공식언어(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된 모든 특허 문헌을 영어로, 또 그 반대로 번역합니다.

WIPO Translate는 오직 수많은 특허 문헌만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였으며, 발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번역을 수행하는 "영역 인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WIPO Translate는 내부적으로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32개 기술 영역을 갖추어, 번역에서의 모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문장 번역 시 구체적인 관련 영역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번역물을 생성하는데, 이는 특허번역의 세계에서 WIPO Translate만이 가진 기능입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8/article_0004.html

유용한 도움말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국제조사기관에 올바른 형태로 제출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

Q: 이미지 파일로 된 서열목록을 포함한 국제출원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국제조사를 위해서는 서열목록이 전자적 형태로, 텍스트 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출원 시에 서열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제출하지 못하면, 출원 후에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는지, 그렇다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업무 수행 중인 22개 국제조사기관은 모두, 국제조사를 위해 서열목록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출원인이 해당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텍스트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PCT 행정지침(Administrative Instructions, '시행세칙'으로 칭하기도 함)의 부속서 C에 규정된 표준("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 목록 작성 표준")²(이하 "부속서 C")에 따라야 합니다. 부속서 C의 규정은 WIPO 표준 ST.25("특허 출원 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표준")³에서도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나아가, 서열목록은 반드시 해당 국제조사기관에서 허용하는 전자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에 포함된 서열목록이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서면 형태나 이미지 파일(예: PDF 파일)로만 제출되거나 부속서 C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텍스트 파일로 제출된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에서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를 위해 요구되는 표준에 부합하는 서열목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서식 PCT/ISA/225). 이와 함께, PCT 규칙 13의3.1(c)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에 제출 연체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² 참조: <http://www.wipo.int/pct/en/texts/pdf/ai.pdf>

³ 참조: <http://www.wipo.int/standards/en/pdf/03-25-01.pdf>

수수료 액수는 해당 국제조사기관에서 정하되, 국제출원료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22개 국제조사기관 중 아래의 12곳에서 이러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브라질 특허청(INPI)
- 중국 특허청(SIPO)
- 이집트 특허청
- 유럽 특허청(EPO)
- 핀란드 특허청(PRH)
- 이스라엘 특허청
- 인도 특허청
- 한국 특허청(KIPO)
-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 터키 특허청(Turkpatent)
- 미국 특허청(USPTO)
- 비세그라드 특허청(VPI)

또한 상기 서식은 출원인이, PCT 규칙 13의 3.1(a)에 따라 제출된 부속서 C의 텍스트 파일에 담긴 정보가,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서(statement)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한 내 이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요청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서열목록이 필요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PCT 규칙 13의 3.1(d)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의 의무가 해당 서열목록 없이도 유의미한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정도로 국제출원을 조사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국제조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심사관이 특정 서열에 관한 청구내용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된 서열목록이 필요 표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상기 국제조사기관 중 한 곳에서 연체수수료 납부를 요청했는데 출원인이 해당 수수료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요청에 따라 제출된 서열목록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각 국제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전자매체 유형에 관한 내용과 PCT 규칙 13의 3.1(c)에 따라 제출 연체수수료를 부과하는 국제조사기관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수수료 금액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의 관련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은 모두 국제출원의 나머지 부분들과 동시에(적어도 같은 일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출원 시 서열목록을 부속서 C의 텍스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텍스트 파일이 국제출원의 공개 및 조사에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PCT Rule 13의 3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목적으로 해당 텍스트 파일의 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출원을 할 때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을 부속서 C의 텍스트 파일로 제출하여 국제조사기관의 업무 처리에 맞는 형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조사기관에 해당 연체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뿐만 아니라 30매를 초과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 산정 시, 발명의 설명에 포함된 텍스트 형태의 서열목록 부분이 국제출원의 총 페이지수/용지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국제출원과 함께 서열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출원서 서식에 서열목록이 국제출원의 일부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출원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 ePCT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 서열목록은 부속서C의 텍스트 형태여야 하고(PDF 형태는 불가) "국제조사(International Search)" 섹션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국제조사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을 첨부합니다(Sequence listings in machine readable format are attached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체크박스에 체크한 뒤 "국제출원의 일부로 제출(Filed also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을 선택합니다.
- PCT SAFE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 부속서 C의 텍스트 파일로 된 서열목록 업로드 시 먼저 생물(Biology) 탭의 "명세서에 서열목록 포함(The description contains a sequence listing)" 체크박스에 체크한 뒤 내용(Contents) 탭의 "명세서의 일부로 제출(submitted as part of the description)"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 수리관청인 미국 특허청에 EFS-Web을 통해 PDF 출원서로 전자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서식 PCT/RO/101의 제9기재란(Box No. IX) 내 항목(g)의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7-8월 | 2018/07-08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PCT 실무그룹

제11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가 2018년 6월 18-22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PCT규칙 변경에 합의

실무그룹은, 출원인이 PCT 규칙 54의2.1(a)에 따른 적용 가능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국제예비심사 착수를 지연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명시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될 시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해당 심사에 착수하도록 허용하는 PCT 규칙 69.1(a) 개정안을 PCT 총회에 제출하여 2018년 9-10월 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데 합의했습니다(문서 PCT/WG/11/20 참조). 본질적으로 이는 기본 방식을 단순히 반대로 뒤집어, 국제예비심사 청구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원인의 다른 명시적 요청이 없으면 심사가 즉시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서비스

실무그룹은 5년 전부터 시행된 PCT 제3자 정보제공 제도(PCT third party observations system)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더 잘 알리고 제공하는 일과 관련된 추가 업무를 인준했습니다(문서 PCT/WG/11/11 및 문서 PCT/WG/11/26 내 문단 25 참조).

실무그룹은 국제단계의 문서와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내단계 진입을 돕는 시스템을 위한 요건 및 제안을 개발하도록, 국제사무국이 지정관청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문서 PCT/WG/11/25 및 문서 PCT/WG/11/26내 문단 29 참조).

실무그룹은 ePCT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리한 문서를 검토했습니다(문서 PCT/WG/11/9 참조).

실무그룹은 지정관청이 PCT 국내단계 진입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PCT 규칙 95.1의 규정에 의거)하는 데 있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 주목하고, 송부된 자료의 완성도와 품질을 개선하도록 관청들에 전달된 권고사항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문서 PCT/WG/11/10 참조).

PCT 수수료

실무그룹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특정 한도까지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안을 논의하고(문서 PCT/WG/10/18 Rev.(영어) 및 18(기타 언어) 참조), 사무국이 관련 이슈와 해결책, 리스크와 완화조치 파악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추가 논의를 위해 피드백을 토대로 이행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문서 PCT/WG/11/26 내 문단 57 참조).

실무그룹은 국내관청들과 국제사무국 간 PCT 수수료 거래에 관한, 최근 시범사업이 시작된 "그물구조(netting structure)" 도입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경과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도입의 주 목적은 수수료 수입의 통화 환율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리관청 및 ISA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데 있지만, 이는 앞으로 출원인을 위해 개선된 납부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줍니다(문서 PCT/WG/11/4 참조).

실무그룹은 또한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특정 수수료의 감면과 관련한, 2015년 7월 1일 발효된 개정된 자격 기준의 시행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문서 PCT/WG/11/23 참조).

PCT 법적 체계

실무그룹은 국제예비심사 착수에 관해 합의된 개정사항뿐 아니라 PCT 규칙과 관련한 다음의 제안들도 논의했습니다.

- "착오로" 출원된 요소 및 부분 - 실무그룹은 워크샵과, "착오로" 출원된 요소 및 부분이 포함된 국제출원의 수정 조건을 정리한 EPO의 문서를 통해 관련 이슈 및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문서 PCT/WG/11/21). 이로써 국제사무국에 다음 번 실무그룹 회의를 위해 PCT 규칙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전산장애(정전 등) 시 안전장치 - 실무그룹은 구체적 제안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해당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협의해 다음 번 실무그룹 회의에 수정된 제안을 제출하겠다는 EPO의 의도에 주목했습니다(문서 PCT/WG/11/26 내 문단 86 참조).
-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기능 위임 - 실무그룹은 본 제안의 진행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문서 PCT/WG/11/7 참조).

PCT 공개출원 내용

실무그룹은 국제조사기관(ISA)들이 국제출원에 부여된 국내특허분류 기호(특히, CPC 기호)를 국제사무국에 전달하도록 하는 제안들에 관한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문서 PCT/WG/11/8 참조). 필요한 기술변경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실무그룹은 WIPO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에서 신설한 서열목록 전담반(TF)을 이끌고 있는 EPO의 보고서와(문서 PCT/WG/11/13 참조), WIPO 표준 ST.26에 따른 서열목록들이 PCT 제도 내에서 어떻게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돕기 위한 PCT 규칙 및 행정지침 수정 초안(문서 PCT/WG/11/24 및 24. Cor. 참조)을 검토했습니다.

PCT 제도 발전 방향

실무그룹은 2017년 2월 2일 3백만 번째 PCT 공개출원을 맞아 발표된 "PCT제도 - 개요 및 가능한 미래 방향과 우선순위(The PCT System - Overview and Possible Future Directions and Priorities)"라는 제목의 사무총장의 메모에 제안된 주요 업무 분야들의 우선순위와 방향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법적/제도적 이슈, 기술(IT) 환경, 재정적 이슈, 품질의 네 가지 주요 분야를 다루었습니다(문서 PCT/WG/11/5 및 문서 PCT/WG/11/26내 문단 35-39 참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국제출원

실무그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국제출원에 대한 문서를 논의하고(문서 PCT/WG/11/14) 국제사무국의 기존의 관련 문제 처리 방침이 적절하며 PCT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무그룹은 국제사무국에게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다음 실무그룹 회의에서 상황을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사항

실무그룹은 아래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도 검토했습니다.

- PCT에 따른 기술원조 조정 (문서 PCT/WG/11/22)
- IP5 관청들 간 협력심사(문서 PCT/WG/11/15) (협력심사 관련 내용은 아래 "협력심사" 단락 참조)
- PCT 최소문헌 전담반(TF)(문서 PCT/WG/11/12)

요약서 및 관련 문서

아래 웹페이지에서 의장의 요약서(문서 PCT/WG/11/26)와 회의 문서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wg/11

회의에 관한 보고서도 상기 페이지에 추후 게재될 예정입니다.

협력심사

IP5 관청들은¹ 2018년 7월 1일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발족했는데, 이는 PCT에 따른 국제조사에 협력적 접근 방식을 시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으로, 특히 이러한 신규 정책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과 함께 참여관청들의 기대 효율성 증가를 평가해 보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앞선 두 건의 유럽 특허청(EPO), 한국 특허청(KIPO), 미국 특허청(USPTO) 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2010년 6월 PCT 실무그룹의 권고에 따라 상호보완적 기량을 가진 각국의 심사관들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IP5 관청들 간 협력심사에 대한 구상을 더욱 개발하고 시험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협력심사 시범사업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인 주도적 접근: 시범사업에서 처리되는 출원은 출원인이 선택
- 균형 잡힌 업무량 배분: 모든 협력 국제조사기관(ISA)들이 개개의 협력심사 작업 결과물 생성에 기여. 2년의 기간 동안, 각 관청은 "주심기관(main ISA, 주 ISA)"의 역할에 따라 약100건의 국제출원을, "부심기관(peer ISA, 부 ISA)" 역할에 따라 약 400건의 국제출원을 처리하게 됨.
- PCT 출원 처리 시 모든 협력 ISA가 공통의 품질 및 작업 기준 적용
- 최종 국제조사보고서(ISR) 및 견해서는 주심기관이 작성하는데, 이 때 부심기관들의 견해를 참작하되 의견 차이를 인용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음. 다만, 부심기관들이 제시한 견해는 국제사무국에서 해당 ISR을 수리 및 처리하고 나면 출원인이 ePCT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ISR이 공개되면 PATENTSCOPE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IP5 PCT 협력심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된 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서는, 출원서를 ePCT를 통해 출원한 경우 ePCT 내 제공된 기능을 통해 작성하거나, 아래의 편집 가능한 PDF 파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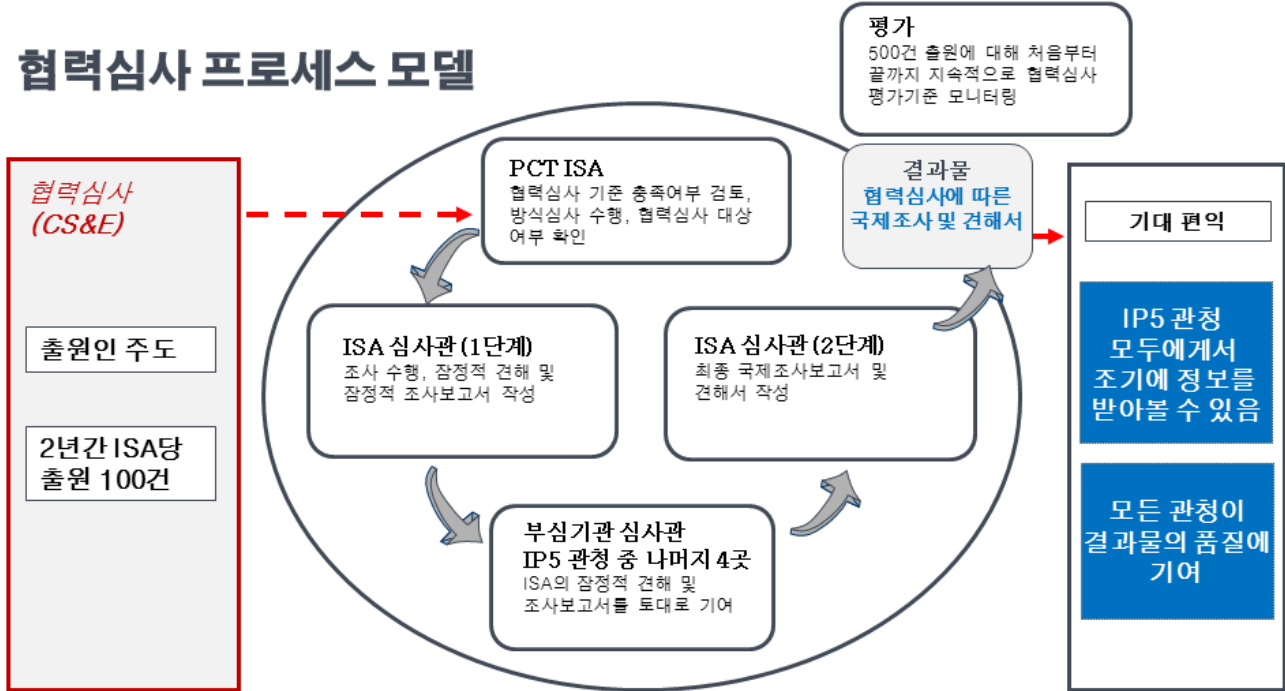
http://www.wipo.int/pct/en/forms/rcse/ed_rcse.pdf

이를 PDF로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출력 및 스캔하여 해당 전자출원시스템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만 허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 서식만 사용하십시오.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IP5 관청들이, 부심기관들이 사용하도록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는 경우, 주심기관이 허용하는 다른 언어로 된 출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¹ IP5 관청은 세계 최대 IP 관청 다섯 곳의 모임을 일컫는 말로, 해당 모임은 전 세계 특허심사과정의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특허청(SIPO), 미국 특허청(USPTO)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출원인들은 관할 ISA(주심기관)에서의 국제조사에 대한 표준 수수료만 납부하게 되고, 협력심사 틀 안에서 주심기관이 작성한 최종 ISR 및 견해서는, 여느 ISR 및 견해서와 동일하게 PATENSCOPE를 통해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심기관이 제공한 견해는 PATENSCOPE에 별도 문서로 업로드 될 것입니다.

아래 모델에 관련 프로세스 및 기대 편익의 일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국제출원 총 500건, 그리고 주심기관 당 출원인별 출원 10건으로 제한됩니다. 협력심사 프로젝트의 개념 및 틀과 참여 요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IP5 관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notice&c=1003&cp=1&pg=1&npp=10&seq=16962&catmenu=m03_01_01 (한국어)
-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8/05/a47.html>
- https://www.jpo.go.jp/torikumi_e/pct_kyoudouchousa_shikou_e.htm
- <http://www.sipo.gov.cn/ztzl/zlscgslpphzl/csexm/index.htm>
- <https://www.uspto.gov/patents-getting-started/international-protection/patent-cooperation-treaty/pct-collaborative-search>

특정 PCT 수수료 감면 대상

2018년 7월 1일 발효된, 국민 및/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정 PCT 수수료가 감면되는 국가들의 목록이 아래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www.wipo.int/pct/ko/fees/index.html>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한국 특허청, ePCT로 문서 접수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한국 특허청(ISA/KR)은 출원인이 국제출원일이 지나서 제출한 문서를 ePCT를 통해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ISA/KR은 ePCT, 팩스, 일반 우편의 세 가지 문서 송달 방식을 허용하게 됩니다.

ePCT를 통해 제출 가능한 문서에는, PCT 규칙 제91조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 서열 목록, 선조사 결과, 그리고 위임장과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출원인은 ePCT 내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s)" 기능을 사용해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추가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15>

PCT 서식,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개정 PCT 서식(2018년 7월 1일 발효)

아래 열거된 신규/개정 서식은 이곳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forms/index.html>

출원서 서식

출원서 서식 2018년 7월 버전(PCT/RO/101)을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2018년 7월 버전(PCT/IPEA/401)을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 관련 서식

서식 PCT/IB/375(보충적 조사 신청서)가 수정되어,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내 단락 116D 및 247이 2018년 7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단락 116E가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내 단락 9.02-9.03, 16.33-16.51, 16.64, 16.82, 16.82A가 2018년 7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및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통합본은 각각 아래 웹페이지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http://www.wipo.int/pct/fr/texts/gdlines.html>

<http://www.wipo.int/pct/es/texts/gdlines.html>

상기 언급된 서식 및 가이드라인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43)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43.pdf>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 (DAS)

PCT 출원인은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선출원 사본을 DAS에서 조회하여 우선권 서류로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접 인증사본을 제출하거나 제출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특허청 (KIPO)

2009년 6월 30일부로 DAS 기탁관청 및 이용관청이 된 KIPO는, 2018년 7월 20일부로 KIPO의 DAS 디지털 라이브러리 범위를 산업디자인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KR>

DAS 참여관청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

2017년 PCT 통계자료

2018년 PCT 연례보고서

2018년 PCT 연례보고서에는 2017년 PCT 관련 활동 및 변동사항이 요약되어 있으며, 2017년 PCT 출원(상위 출원국/상위 출원인/기술분야별 출원 포함)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자료와 국제특허제도인 PCT의 운영실적, 그리고 2016년 국내단계 진입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PCT 연례보고서의 특별 주제는 PCT 출원서에 포함된 출원인 대표 대리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리인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상위 대리인 목록을 도출하고자, PCT 출원서에 언급된 대리인들의 사명을 통일하기 위한 작업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주제는 아래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PCT 출원인들의 상위 외부 대리인들이 누구인가
- PCT 출원을 조직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관리하는 PCT 출원인은 누구인가
- 상위 5개 수리관청에서 외부 PCT 출원인 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어디인가
- PCT 출원인 상위 20명의 주 대리인은 누구인가
- 상위 10위권의 외부 대리인을 주로 선임하는 PCT 출원인은 누구인가

PCT 연례보고서 영문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ko/activity/index.html>

PCT 연례보고서 요약본이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9개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스와질란드, 국호 변경

국제사무국은 국호 "스와질란드" 대신 "에스와티니"를 사용할 것을 통지 받았습니다. PCT 계약국들의 이름이 포함된 PCT 웹사이트 내 모든 목록 및 표와 PCT 출원인 가이드 내 관련 표현들도 이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두 글자로 된 표시코드 "SZ"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아래에 나온 수수료 변동사항 중 일부는 7월 공개된 수수료표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2018년 10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증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USD

상기 변동사항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U) 업데이트)

보충적 조사료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2018년 9월 1일부터,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서 수행한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되는 금액이 수수료표 I(c)에 나온 바대로 변경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RU) 업데이트)

기타 업데이트 사항

다음 업데이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 오스트리아 (전화번호)

BB 바베이도스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BE 벨기에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BN 브루나이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CN 중국 (수수료)

MN 몽골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수수료)

NA 나미비아 (관청명, 위치, 우편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홈페이지 주소)

PT 포르투갈 (수수료)

RU 러시아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SK 슬로바키아 (수수료)

SZ 스와질란드 (국호 변경)

TR 터키 (위치 및 우편주소,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US 미국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UZ 우즈베키스탄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유럽, 러시아, 핀란드, 브라질, 노르딕, 스페인, 중국, 터키, 미국, 비스그라드 특허청)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책자)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6호에서 2018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PCT 규칙 개정문을 PC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데, 이에 더해 업데이트 된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WIPO Publication 274) 종이 책자를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아래 주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27&plang=EN>

종이 책자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주소로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publications@wipo.int

PCT-SAFE 업데이트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2018년 7월 1일, 버전 3.51.083.259) 이 출시되어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

해당 PCT-SAFE 신규 버전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상기 웹페이지에 있는 "출시 정보(Release notes)"와 "신규 사항(What's new)"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PCT 특별기사

PCT 뉴스레터 2018/06호에 PCT 운영 40주년(2018년 6월 1일)에 관한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WIPO 매거진* 2018년 6월호(2018/3호)에는 "특허협력조약 40주년"이란 제목의 보다 심도 있는 기사가 추가로 실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PCT의 장점 일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PCT의 중요성에 대한 PCT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함께, PCT 출원 증가에 대한 내용과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 공조 및 협력을 위한 PCT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도모 및 가속화"의 PCT 비전에 있어 PCT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PCT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매우 실제적인 니즈를 해결해주는데, 이것이 PCT의 눈부신 성공의 비결입니다. PCT는 한편으로 출원인에게 국제시장에서의 특허 보호 취득을 돕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PCT 회원국의 특허청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업무 공조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국제 특허출원 처리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PCT 회원국들의 국내 및 지역 특허청들의 파트너십 또한 PCT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들의 참여, 통찰과 경험, 여기에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있어서 PCT가 진화하고 현실적인 실제 세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점과 함께, 하나의 국제적인 팀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WIPO 본부 및 회원국 특허청의 직원들 덕분에 PCT가 믿을 수 있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해당 기사의 내용입니다. 전체 기사는 아래의 PCT 웹사이트 내 "PCT 특별기사(PCT in the New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news/pct_news.html

*WIPO 매거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

WIPO 매거진 2018/3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pdf/2018/wipo_pub_121_2018_03.pdf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 가이드

PCT 출원인 가이드 중 PCT 국제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자료의 영어 버전이, 2018년 7월 1일부 PCT 규칙 개정사항 및 기타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주소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appguide/>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업데이트 버전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수정된 PCT 서식 및 가이드라인

앞서 나온 "PCT 서식,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수정" 단락을 참조하십시오.

수수료 납부 요청에 대한 경고

PCT 뉴스레터를 통하여, PCT 출원인 및 대리인들이,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지 않았으며 PCT 국제출원의 처리와도 무관한 수수료 납부 요청을 받은 사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경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드린 사례에 더하여, "IPTA - International Patent and Trademark Agency"로부터의 수수료 납부 요청이 파악되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이 요청서 및 기존에 PCT 사용자가 WIPO에 알려주신 요청서 사례들을 보실 수 있으며, 관련 일반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한국어)

PCT 출원인 및 대리인들께서는 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해당 출원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무국만이 수행하는 업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PCT 조약 제21조(2)(a) 참고) 그러한 국제공개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국제공개의 법적 효과는 PCT 조약 제29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서를 받으신다면, 출원인들과 대리인들께서는 소속 기관 내 수수료 지불 담당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같은 요청을 받았을지도 모르니 발명자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 요청서와 관련하여 의심이 들 때는 주저없이 아래 연락처로 국제사무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 41-22) 338 83 38

팩스: (+ 41-22) 338 83 39

E-mail: pct.legal@wipo.int (한국어 문의 가능)

PCT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들(PCT 사용자)께서는 각국 정부 및 소비자 보호 단체와 함께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원 제기를 위한 문구 초안과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정부 및 소비자 보호 기관의 목록은 앞서 알려드린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도움말

팩스 전송 실패 등의 경우, 팩스 외에 국제사무국에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Q: 예전에 팩스로 제출했던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보정서를 PCT 제19조에 따라 이번에도 팩스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팩스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ePCT는 알고 있지만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고 ePCT에서 해당 국제출원에 접근할 권리도 없습니다. 제출기한이 촉박한데, 국제사무국에 ePCT로 문서를 빠르고 쉽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팩스 기술이 아날로그에서 VoIP(음성 인터넷 프로토콜)로 옮겨가면서 통신서비스업체가 VoIP 기술로 전환한 경우 팩스 전송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연결 단계에서든 VoIP 기술이 사용되면 실제로는 전송 내용이 일부 또는 모두 분실되었는데도 송신자에게는 전송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사무국과 주고받는 팩스에도 VoIP로의 전환이 적용됩니다. *PCT 뉴스레터* 2017/12월 호에 나온 공지사항을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http://www.wipo.int/edocs/pctndocs/en/2017/pct_news_2017_12.pdf

팩스로 문서를 전송할 때 전송이 실패하거나 불완전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원인께서는 국제사무국(수리관청의 역할을 하는 경우 포함)에 문서 송부 시 팩스 사용은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PCT 제19조에 따른 청구범위의 보정서 포함, 서신/문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방법은 ePCT 내 해당 "액션(Action)"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ePCT에 친숙하지 않고 기한도 촉박하니, 대신 간편하게 ePCT 내 문서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수고 없이 문서가 출원서 파일에 바로 삽입되고 국제사무국에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PCT 문서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른 WIPO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만들어놓은 WIPO 계정이 없다면, 계정만 하나 만들면 됩니다. ePCT 홈페이지(<https://pct.wipo.int>) 내 "WIPO 계정 만들기(Create WIPO account)" 링크를 클릭해서 필요 정보를 작성하고 계정 인증을 완료하는 데 몇 분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시작하기(Getting started)"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88>

WIPO 계정으로 ePCT의 다른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강력한 인증방법을 설정하십시오.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Google Authenticator같은 일반적인 일회성 패스워드 생성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면, 혼자서도 일 분이면 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으로 바로 문서를 업로드하기를 원하면 생성한 ID와 패스워드만 입력하고 로그인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원하면 나중에 강력한 인증방법을 사용하고 ePCT내 다른 기능들도 사용하면 됩니다. 강력한 인증 없이 로그인 시에는 아래 ePCT기능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원 후 문서를 PDF 형식으로 국제사무국으로만 업로드
- 제한된 종류의 신청서 온라인 제출. 공개된 출원에 대한 것 중 확인이 엄격하지 않은 일부만 가능.
- 제3자 정보제공 서비스 사용

ePCT에 로그인하면 첫 기본화면이 "워크벤치"인데, 강력한 인증 없이 로그인 했거나 ePCT 내 국제출원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 공백으로 나타납니다. 문서(이 경우, 제19조의 보정서)를 업로드 하려면, 해당 국제출원을 식별하기 위해 먼저 검색란에 PCT 출원 번호를 입력하고, 국제출원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ePCT가 즉시 일치하는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확인하고, 일치 시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s)"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ePCT 내 해당 실행 기능이 열립니다. 그러면 아래의 간단한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 "문서 유형(Document type)" 드롭다운 메뉴에서 국제사무국에 전송할 문서 유형 선택(강력한 인증 없이 ePCT에 로그인한 경우 수신인은 국제사무국만 가능)
- "문서 추가(Add document)" 버튼을 클릭해 내 컴퓨터에서 문서를 찾아 첨부. 이 버튼은 파일 형식 유형도 나타내는데, 보통은 PDF이나 서열목록의 경우 텍스트 형식이 필요(필요 시, 동일 업로드 건에 추가할 문서 유형 추가 선택 가능)
- 모든 필요 문서 추가 후, 국제사무국에 남길 말이 있으면 비공식적 메시지란(선택)에 입력하면 업로드 된 문서에 동반될 자동 생성된 커버레터(cover letter)에 나타나게 됨("미리보기(Preview)" 버튼을 클릭해서 커버레터 미리보기 가능)
- 추가할 서명 형식 선택. 해당 국제출원에 대해 자격을 갖춘 서명인의 서명이 들어간 서신이나 다른 문서를 이미 첨부했으면 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서명을 입력하거나, 자격을 갖춘 서명인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고 해당 란에 서명인의 자격 입력.
- "업로드(Upload)"를 클릭해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국제사무국에 첨부문서 제출

추가 내용은 아래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s)"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20>

향후 출원 시, WIPO 계정에 대해 한 번 강력한 인증을 설정하고 eOwner나 eEditor로서 접근권한을 부여 받으면 ePCT 액션 "제19조에 따른 보정(Amendments under Article 19)"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정서를 docx나 텍스트 기반 PDF 형식 중 하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국제출원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출원인은 출원 후 해당 출원에 대한 접근권한(eOwnershi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출원을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선택한 수리관청에서만 허용한다면 ePCT를 사용해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원 전에도 ePCT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ePCT와 호환되는 출원 소프트웨어(PCT-SAFE, EPO 온라인 출원, 또는 JPO-PAS)로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 시 아래 FAQ에 설명된 단계를 통해 ePCT 접근권한을 설정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18>

WIPO는 새로운 PCT 일반 업로드 시스템(ePCT 외에)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ePCT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 없이 이 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문서 업로드나 국제출원 제출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9월 | 2018/09호

PCT 웨비나(Webinar) 안내

WIPO에서는 온라인 세미나 서비스인 웨비나를 통해 원격으로 PCT 관련 정보 및 강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11월에 한국어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PCT 규칙 개정 사항 및 최근 동향

일시: 2018. 11. 15. (목) 오후 5시~6시 (한국 시간)

사전 등록: 인터넷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5337286021504659202>)이용

이용: 등록 후 안내 메일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정해진 시간에 접속 (무료)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나 이어폰 등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비 필요)

안내 및 문의 (한국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PCT 법무국 (taegeun.kim@wipo.int)

* WIPO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관련 내용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WIPO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PCT 조약 및 규칙과 국내법 간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의 철회

우간다 (PCT 제 22 조제 1 항)

지정관청의 역할을 하는, 우간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산하 등록청(Registrar General's Department) 산하 특허등록소(Patents Registry)는, 2002년 4월 1일부로 개정된 PCT 제 22 조제 1 항이 우간다 국내법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데 이어(PCT 뉴스레터 2002/02 호 표지 참조), 다시 2015년 4월 1일부로 해당 통지를 철회했음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1 개월의 기한이 2015 년 4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었고 PCT 제 22 조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를 출원인이 아직 행하지 않은, 우간다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들에 대해, PCT 제 22 조 제 1 항에 따른 30 개월의 기한이 2015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PCT 자료들에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PCT 제 1 장 및 제 2 장에 의한 국내/지역단계 진입 기한"

http://www.wipo.int/pct/en/texts/time_limits.html

"PCT 유보, 선언, 통지 및 상충"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UG)

<http://www.wipo.int/pct/guide/en/gdvol2/annexes/ug.pdf>

TR 터키 (PCT 규칙 49 의 3.1 및 49 의 3.2)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의 역할을 하는 터키 특허청(Turkpatent)(DO/TR)은 아래와 같은 국내법과의 상충사실에 대한 통지를 2017 년 1 월 10 일부로 철회함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 PCT 규칙 49 의 3.1(g)에 따른 통지(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PCT 뉴스레터 2006/06 호 4 페이지 참조)
- PCT 규칙 49 의 3.2(h)에 따른 통지(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PCT 뉴스레터 2006/06 호 5 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2017 년 1 월 10 일부로 터키 특허청(Turkpatent)은 이날 또는 그 이후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아래의 PCT 규칙을 각각 적용합니다.

- PCT 규칙 49 의 3.1(a) 내지 (d)
- PCT 규칙 49 의 3.2(a) 내지 (g)

이에 따라, 터키 특허청(DO/TR)은 2017 년 1 월 10 일 또는 그 이후에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에 대해 우선권회복 신청 건들을 검토하고, 요건의 충족 시, 타 수리관청이 내린 우선권회복 결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지정관청(DO)인 터키 특허청(DO/TR)은, 선택(또는 지정)관청으로서 접수한 우선권회복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due care)"의 기준을 적용하며¹ 해당 요청에 대한 수수료로 TRY 1,890 를 부과함을 PCT 규칙 49 의 3.2(g)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내 요약(TR) 부분과, "우선권 회복" 및 "PCT 유보, 선언, 통보 및 상충"에 나온 표들이 각각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texts/restoration.html>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¹ 터키 특허청은 PCT 규칙 26 의 2.3 에 따라, 수리관청으로서 접수한 우선권회복 요청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 기준을 이미 적용 중임.

PCT 정보 업데이트

LU 룩셈부르크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관련 요건)

룩셈부르크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프랑스어나 독일어 외 다른 언어로 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지정(또는 선택)관청인 룩셈부르크 특허청은 프랑스어나 독일어 번역 외에 영어 번역도 허용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출원이 영어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LU) 업데이트)

보충적 조사료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우크라이나 특허청)

우크라이나 특허청에서 수행한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되는 수수료의 액수 및 분류가 2018 년 9 월 1 일부로 변경되어 수수료표 I(c)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아래의 납부 수수료 금액도 변경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에 대한 수수료,
 페이지당: EUR 0.40

또한 해당 관청은, 국제출원 파일에 포함된 문서의 사본에 대한 수수료도 2018 년 9 월 1 일부터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는 페이지당 EUR 0.90 라고 통지했습니다.

2018 년 11 월 1 일부터는,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서 수행한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되는 금액이 수수료표 I(c)에 나온 바와 같이 변경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RU 및 UA) 업데이트)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회의 자료 (PCT 총회)

2018 년 9 월 24 일부터 10 월 2 일까지의 기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50 차(제 29 차 임시) PCT 동맹 총회(PCT 총회)를 위해 준비된 자료들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7815

2017 년 WIPO PCT 사용자 설문조사

PCT 의 전 부문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고 제공 서비스 분야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번째 PCT 사용자 설문조사가 2017 년에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9 개 언어로 진행되었는데, 15 개 국가에서 2,000 명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참여해 전체적인 PCT 제도와 국제사무국 및 기타 관청/기관들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고, 또한 응답자들의 반응에서 이전 2015 년의 설문조사에 비추어 개선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WIPO 에서 제공한 PCT 정보 안내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전세계 응답자들의 전반적 만족도 지표가 90%의 높은 수준에 머무름.

- WIPO 에서 제공한 PCT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94%
- 다른 관청/기관들 전체에서 수리관청/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제공한 PCT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91%
- PCT 직원의 문의응대 서비스 품질(친절, 유능, 해결지향적 태도, 빠른 대응), 정보 안내 체계의 품질(내용 및 정확성),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높이 평가
- WIPO 에서 제공하지 않은 PCT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인식은 좋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PCT 사용자들의 구체적 제안도 접수(수리관청 직원의 접근성,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품질 등)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이 제안한 개선 필요 분야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PCT 개별 관청들에서 제공한 PCT 서비스에 관한 응답자들의 구체적 지적 사항 및 내용은 해당 관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설문 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edocs/mdocs/pct/en/pct_wg_11/pct_wg_11_presentation_user_survey.pdf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셨다면, PCT 사용자라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의견이나 피드백을 PCT 법무국에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pct.legal@wipo.int). 다음 번 설문조사는 2019 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WIPO 펠(Pearl) 업데이트

WIPO 의 다국어 용어 포털인 WIPO 펠을 통해, PCT 출원서 및 국내특허문서에서 파생된 수 많은 과학기술 용어와 함께 주요 PCT 법률 용어가 무료로, PCT 공개언어 10 개 모두로 제공됩니다. WIPO 펠은 여러 언어에 걸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며, 보다 쉽게 과학기술지식을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어 데이터베이스 개선

WIPO Pearl 용어 데이터베이스가 15,000 개의 새 용어와 2,500 개의 새 개념 관계를 추가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WIPO PCT 언어 전문가가 검증한 160,000 개가 넘는 특허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17,000 개(85%)의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 관계는 '개념도 검색'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관계들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개념 클라우드'에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념도검색" 기능에는 "개념 경로 검색"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 개념들을 제시하며 사용자들이 10 개 언어 중 어느 언어로든 두 개념 간 경로를 찾을 수 있게 하고, 해당 용어들 모두 또는 일부를, 원하면 동의어까지 함께, PATENTSCOPE 로 보내 키워드 조합 검색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PATENTSCOPE 에서 원하는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언어 검색" 기능도 마찬가지로 PATENTSCOPE 와

연동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용어가 PATENTSCOPE 에서 바로 검색되어 해당 용어를 포함한 모든 특허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의 협력

WIPO 와 캐나다 정부 산하 번역국의 전문용어표준화부 간의 협력을 통해 110 건의 다국어 용어 기록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되었으며, 대화형 인터페이스("챗봇") 관련 혁신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용어가 정의되었습니다. 용어 및 개념도에 대한 전문가 검증은 کنکور대학교, 델하우지대학교, 라발대학교(모두 캐나다 대학) 및 캐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들과의 협력

이 버전에는 또한 다음 대학의 학생들이 제공하고 WIPO 의 검증을 거친 540 건의 다국어 용어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블린시립대학교(아일랜드), 취리히응용과학대학교(스위스), 맨체스터대학교(영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미국)

이러한 용어 협력에 관심이 있는 대학들은 wipopearl@wipo.int 를 통해 WIPO 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IPO 펼은 아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reference/ko/wipopearl/index.html> (한국어)

PATENTSCOPE 검색시스템

파워포인트(PPT) 자료

2017 년 11 월에서 2018 년 7 월 사이에,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 관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제공되었습니다.(영문)

- 여러 인터페이스, 기능, 연산자 등을 조합하여 복잡한 검색구문을 만드는 방법 (2017 년 11 월)
- 2017 년에 대한 회고와 향후 계획 (2017 년 12 월)
- 화학 검색 기능 사용법 (2018 년 1 월)
- 복잡한 검색구문 작성법 (2018 년 2 월)
- PATENTSCOPE 에서 각종 번역 툴 사용법 시연 (2018 년 3 월)
- PATENTSCOPE 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및 툴 (2018 년 4 월)
- 기본 검색 기능 사용법 시연 (2018 년 5 월)
- 복잡한 검색구문의 사용 예시 (2018 년 6 월)
- 화학구조 검색 시연 (2018 년 7 월)
- IPC 및 PATENTSCOPE 에서의 활용 (2018 년 8 월)

상기 웨비나에서 사용된 파워포인트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atentscope/en/webinar/>

향후 제공되는 웨비나 관련 정보는 PCT 세미나 일정표(PCT Seminar Calendar)에 공표됩니다.

유용한 도움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여러 보고서들 간 차이점

Q: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1 장),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 장)가 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사무국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종류가 무척 다양하지만 상호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보통 국제단계의 각기 다른 시점에서 작성되며, 일부 보고서는 선택사항으로 출원인의 요청 시에만 작성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고서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조사보고서(ISR)

국제조사보고서(서식 PCT/ISA/210)는 국제조사기관(ISA)에서 작성하는데(PCT 제 17 조제 2 항(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경우 제외²), 국제조사기관이 조사용 사본(국제조사기관의 국제출원 사본)을 수리한 날로부터 3 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 개월 중 더 늦게 완료되는 일자가 작성 기한입니다(PCT 규칙 42).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1 장 및 제 2 장),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또는 지정(또는 선택)관청의 심사의 기초가 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청구된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문헌의 인용,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발명의 기술 내용의 분류, 조사된 기술분야, 검색한 전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인용문헌과 관련된 청구항, 인용문헌의 범주, 신규성 또는 진보성 평가에 있어서 인용문헌의 관련성을 명시합니다.

또한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발명의 명칭과 요약서를 국제조사기관이 승인했는지를 명시하며, 국제조사기관이 둘 중 하나라도 승인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한 명칭 및/또는 요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PCT 규칙 44.2 참조). 국제조사보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의견이나 이유, 주장, 설명에 대한 표현도 포함하지 않습니다(PCT 규칙 43 참조).

국제조사보고서는 작성 후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전달됩니다. 국제사무국은 해당 국제출원이 공개되는 날에 국제조사보고서를 PATENTSCOPE 에 올립니다(국제공개³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후에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리한 경우 제외. 이 경우에는 수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보고서를 받은 후 PCT 제 19 조에 따라 국제출원의 청구범위를 한 번 보정할 수 있습니다.

² 국제조사기관이 해당 국제출원이, PCT 규칙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할 의무가 없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유의미한 조사(meaningful search)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한 경우.

³ 국제출원은 보통 우선일로부터 18 개월이 지난 직후에 공개됨(PCT 제 21 조제 2 항(a)).

2018년 7월 1일 시작된 새로운 협력심사 시범사업에 따라, 제한된 수량의 국제조사보고서가 주요 국제조사기관 5곳(IP5 관청들)의 협력심사를 통해 작성되게 됩니다.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8/07-08 통합호를 참조하십시오.

2.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견해서(WO-ISA)(서식 PCT/ISA/237)도 함께 작성하는데, 이는 발명의 특허성과, 해당 국제출원이 국제조사기관이 검토한 범위 안에서 PCT 조약과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제공합니다. 해당 견해서는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관련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해당 문헌이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견해서(아래 참조)와 내용 범위가 매우 유사합니다. 국제조사보고서의 경우 관련 선행기술 판단 기준 일자가 해당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인데 비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있어서는 상기 일자가 해당 국제출원의 우선일이 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조사보고서와 동시에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 전달되고, 해당 국제출원이 공개되는 날에 **PATENTSCOPE**에 공개됩니다(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후에 국제사무국이 견해서를 수리한 경우 제외. 이 경우에는 수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

PCT 규칙에서는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견해서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의견이나 주장, 첨언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이를 국제예비심사가 요청되지 않는 경우 "비공식 의견(informal comment)"으로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비공식 의견의 제출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5/01 및 2015/04 호 참조). (PCT 규칙 43의 2 참조)

3.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주(main)" 국제조사 외에, 출원인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조사기관들 중 한 곳에 보충적 국제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며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의 수행을 맡은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의 국제출원에 대해, 이전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보충적 국제조사의 수행 시작 전에 확인 가능한 경우 이들을 참작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SISR)(서식 PCT/SISA/501)는 견해서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견해서에 들어가는 내용인 인용문헌과 조사범위에 대한 설명을 일정부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국제사무국이 수리 후 **PATENTSCOPE**에 공개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전적으로 선택사항인데, 선행기술을 보다 폭넓게 살펴보고 싶은 경우, 특히 특정 언어로 된 내용을 검토하고 싶은 경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PCT 규칙 제 45의 2 참조)

4.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1 장)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지 않아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사무국이 국제조사기관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 1 장)"(서식 PCT/IB/373)의 기초가 됩니다(PCT 규칙 66.1의 2(a) 참조). 국제사무국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1 장) 사본을, 출원인이 제출한 비공식 의견과

함께,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지난 후 해당 지정관청에 전달하고 PATENTSCOPE 에 올려 대중에 공개합니다. (PCT 규칙 44 의 2 참조)

5.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제 2 장)(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사무국에 달리 통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자체적 첫 견해서로 사용되며, 출원인은 PCT 규칙 54 의 2.1(a)에 규정된 기간⁴의 만료 전에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답변서와 해당 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CT 규칙 43 의 2.1(c)).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간주되지 않아도,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해당 견해서를 참작해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또한 의무적인 추가조사(top-up search)를 수행하여,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일 이후에 공개되거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용 가능하게 된 관련 선행문헌을 찾아봐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추가 견해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출원인에게도 추가 보정서나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 장)(서식 PCT/IPEA/409)를 작성하는데, 이는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구속력이 없는 견해로, 청구항 별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진술 및, 관련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한 인용문헌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보정된 PCT 출원에 기초한 경우, 보정서를 포함한 출원 전체의 사본이 보고서에 부속서로 첨부됩니다.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 장)는 보통 우선일로부터 28 개월이 지나기 전에 발행되며,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모두 송부됩니다. 국제사무국은 보고서 사본을 해당 선택관청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PCT 제 40 조제 2 항에 따라 출원인이 선택관청에 명시적 요청을 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 국내단계 조기 진입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합니다. 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지난 후 PATENTSCOPE 에 올라가 대중에 공개됩니다. (PCT 규칙 70 참조)

⁴ 국제조사보고서(또는 PCT 제 17 조제 2 항(a)에 따른 선언)와 PCT 규칙 43 의 2.1 에 따라 작성된 견해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3 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 개월 중 더 늦게 만료되는 기한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중대한 특정 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미국 특허청에의 전자출원 절차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PCT-PPH)

신규 시범사업 (영국-브라질, 덴마크-브라질)

PCT 업무 결과물을 포함시키기 위해 PPH 시범사업 연장 (캐나다-중국)

협력심사 업데이트

유럽 특허청: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시범사업 할당량 도달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PCT-SAFE 사용 중단 관청들 (포르투갈, 폴란드, 로마니아, 리투아니아)

PCT 정보 업데이트

CN 중국 (수수료)

CO 콜롬비아 (이메일 주소)

KH 캄보디아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LA 라오스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LT 리투아니아 (전자출원)

PL 폴란드 (전자출원)

PT 포르투갈 (전자출원, 수수료)

RO 로마니아 (전자출원)

SE 스웨덴 (수수료)

UG 우간다 (관청명, 위치, 우편주소, 전화/팩스번호, 이메일/홈페이지 주소, 국제형조사 관련 규정, 국내단계 진입 기한)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인도 특허청, 우크라이나 특허청, 중국 특허청(SIPO), 스웨덴 특허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우크라이나 특허청, 스웨덴 특허청)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출원서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중국어)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개정 (러시아어)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10월 | 2018/10호

PCT 동맹총회

제 50차 PCT 동맹총회(PCT 총회)가 WIPO 회원국 총회의 일환으로 2018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래 회의 요약내용에 나온 자료들을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T 총회 자료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a/50

PCT 실무그룹 회의 자료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wg/11

PCT 총회에서는, 문서 PCT/A/50/2의 부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PCT 규칙 69.1(a)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아래 항목들을 모두 수리했다면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 국제예비심사 청구서
- 관련 수수료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PCT 제17조제2항(a)에 따른 선언
- PCT 규칙 43의2.1에 따라 작성된 견해서

단, PCT 54의2.1(a)의 규정에 따른 기간만료까지 국제예비심사 착수를 연기해 달라는 출원인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문서PCT/WG/11/20 참조). 본질적으로 이는 기본 방식을 단순히 반대로 뒤집어, 국제예비심사 청구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원인의 다른 명시적 요청이 없으면 심사가 즉시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들은 2019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이날 또는 이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출원에 적용됩니다.

PCT 총회에서는 아래의 내용도 진행되었습니다.

- PCT 실무그룹이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보고서(문서PCT/A/50/1) 검토(PCT 뉴스레터 2018/07-08 통합호에 소개)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신청 시 관청들이 사용할 표준 양식 채택(문서PCT/A/50/3 참조)

- 캐나다 특허청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관한 신규 합의문의 내용 개정에 동의 (문서PCT/A/50/4 참조)

한국 특허청: ePCT를 통한 서류 접수에 대한 추가 정보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한국 특허청(KIPO)이 2018년 8월 13일부로 ePCT를 통한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는 지난 소식에 이어(*PCT 뉴스레터* 2018/07-08 통합호 참조), 전자출원 관련 통지 내용이 2018년 10월 11일자 *공문(Official Notices)(PCT 공보(PCT Gazette))*에 정식 게재되었습니다. 아래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 (DAS)

PCT 출원인은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선출원 사본을 DAS에서 조회하여 우선권 서류로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접 인증사본을 제출하거나 제출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DAS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선출원이 출원된 관청이 DAS 기탁관청이어야 하고, 국제출원이 출원된 수리관청은 DAS 기탁관청이 아니어도 됩니다.

칠레 특허청(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Chile))

칠레 특허청은 2018년 10월 1일부터 DAS 기탁관청 및 이용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할 예정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CL>

미국 특허청(USPTO)

2009년 4월 20일부로 DAS 기탁관청 및 이용관청이 된 미국 특허청(USPTO)은, 2018년 10월 1일부로 미국 특허청의 DAS 디지털 라이브러리 범위를 산업디자인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US>

DAS 참여관청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

PCT-SAFE 업데이트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2018년 10월 1일, 버전 3.51.085.261) 이 출시되어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

해당 PCT-SAFE 신규 버전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상기 웹페이지에 있는 "출시 정보(Release notes)"와 "신규 사항(What's new)"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PCT 정보 업데이트

CN 중국 (관청명, 인터넷 주소)

중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SIPO)의 영문 관청명과 인터넷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관청명: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PRC (CNIPA)

인터넷 주소 <http://www.cnipa.gov.cn/>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CN) 업데이트)

EP 유럽 특허청 (통신수단)

유럽 특허청(EPO)은 서류의 팩스 송부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하 시 서류 원본은 유럽 특허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2 (EP)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2018년 12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CHF, ZAR

오스트리아 특허청 ZAR

상기 변동사항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록 D (AT 및 AU) 업데이트)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2018년 12월 1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인 호주 특허청에 납부되는 취급료 금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AUD 289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 (AU) 업데이트)

부다페스트 조약

부다페스트 조약 이란

WIPO가 운영하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은 바이오기술 발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명에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이하 "미생물")이나 미생물의 공중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용도가 포함된 경우, 서면 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미생물의 시료를특수기관에 기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이러한 시료를 특허보호를 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일일이 기탁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르면, 어느 국제기탁기관(IDA)에라도 기탁을 하면 조약 체결국 내 어느 국내 관청에서든, 또한 해당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지역 특허청 어느 곳에서든, 특허 절차상 충분합니다. 그리고 PCT 출원의 경우, 출원 서류에 기탁 관련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따라서 출원인에게 미생물이 포함된 발명의 특허출원과 관련한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 효율적이고 간소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수단을 제공합니다.

부다페스트 조약 관련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budapest>

부다페스트 조약 관련 2017년 통계

1981년 부다페스트 조약의 운영이 시작된 이래 2017년까지 총 기탁 건수는 107,889건에 달합니다. 현재 부다페스트 조약 체결국은 총 80개국이며, 국제기탁기관은 총 47곳이 있습니다.

46개 국제기탁기관의 응답을 토대로 산출된, 2017년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기탁 및 시료 제출에 관한 상세 통계자료는 상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 가이드

PCT 뉴스레터 2018/07-08 통합호에 실린 소식에 더해, *PCT 출원인 가이드* 중 PCT 국제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자료의 프랑스어 버전이, 2018년 7월 1일부 PCT 규칙 개정사항 및 기타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주소에 추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www.wipo.int/pct/fr/guide/>

수수료 및 납부 - PCT 제도

국제단계에서 납부하는 PCT 수수료의 종류, 금액, 납부처, 납부 방법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 웹페이지 한 곳에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및 정리되어 PCT 공개언어 10개 모두로 제공 중입니다. 아래 한국어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ko/fees/index.html> (한국어)

유용한 도움말

맞춤형 PCT 교육 프로그램 신청

Q: 저희 회사는, PCT 활용과 ePCT 사용에 관한 본보기를 다른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현재 진행 중인 PCT 특허 출원 관리에 참고할까 고려 중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WIPO와 진행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WIPO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WIPO 10개 공개언어 중 어떤 언어로든, ePCT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여러 PCT 세미나(기초/고급과정)를 진행하는 강사를 제공합니다. PCT 세미나 일정에는 대중에 공개되는 공개 세미나만 나오기 때문에, WIPO 직원들이 진행하는 세미나가 모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조건이 충족되면 WIPO에서는 기업, IP로펌 및 기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내부 세미나에 강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내부 세미나는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의 사람들로 그 대상이 제한되는데, 보통 기업 직원들이나 법률사무소의 변리사와 직원이 대상이고, 주최측에서 원하면 공개 세미나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WIPO는 사내 교육을 권장하고 지지합니다. 사내 교육의 장점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조직의 구체적 필요 및 목표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 관심도가 낮은 내용은 줄이거나 없애고 관심분야에 더욱 집중
- 참석자들의 PCT에 대한 지식 수준에 맞춘 교육
- 참석자들이 공개 교육에서보다 각자의 필요나 목표에 대해 더 편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질문
- 참석자들의 세미나 장소로의 이동 및 숙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약

제안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참석인원이 충분히 확보되고(가급적 최소 15명) 교육을 진행할 WIPO 직원이 있다면, WIPO에서 직접 강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업체를 대상으로 내부 PCT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IPO 외부인 강사도 많습니다. 공개 프로그램일 수도, 비공개 프로그램일 수도 있으며, 영어뿐 아니라 다른 여러 언어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3자가 주최하는 내부 PCT 교육 프로그램에 WIPO 직원이 강사나 공동 강사로 참여하는 일도 있고, 오랜 경력의 변리사나 특허청 직원¹ 같은 PCT 관련 경험이 많은 WIPO 외부인 강사로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WIPO가 특정 외부 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를 보증하거나 추천할 수는 없지만, 아래 PCT 세미나 일정을 보면 그러한 교육 주최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seminar/seminar.pdf>

공개 세미나의 경우 WIPO 강사가 없으면 PCT 세미나 일정예(외부 교육 제공자가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 포함) "WIPO 강사 없이 진행되는 PCT 행사"라고 표기됩니다. WIPO에서

¹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이나 미국 특허청 직원 중 정기적으로 PCT 세미나에서 강사를 맡는 직원도 있음.

과약한, 최근 외부에서 진행된 내부 PCT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들 중에는 아래가 포함되었습니다.

- 다양한 출원 시나리오 탐색, 각 시나리오 별 장단점 비교
- PCT 제2장의 전략적 활용(국제예비심사 청구 및 PCT 제34조 개정사항)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와의 관계
- 국제특허출원 출원서 작성 요령
- PCT 출원시 협력적 업무 처리를 위한 ePCT 활용
- 진행 중인 PCT 출원 관리 및 기업과 외부 IP로펌 간 협업을 위한 ePCT 활용
- PCT 절차 기록 요령

WIPO 강사를 초빙한 내부 세미나 개최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주소로 WIPO의 PCT 법무 및 사용자 지원과(PCT Legal and User Support Section)로 이메일 주십시오.

pct.training@wipo.int

또는 외부 교육 제공자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WIPO 강사를 원하시면 세미나 내용, 예상 참석인원, 참석자의 PCT 지식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WIPO 직원이나 고문을 파견 시, WIPO는 보통 강사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지만 강의료 또는 사례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미나 준비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인지하시고, 제안하시는 세미나 개최일보다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견 교육 가능 여부나 교육 범위는 강사의 시간이나 업무를 고려하여 결정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교육 외에도 WIPO에서는 PCT 웨비나(webinar) 또는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세미나 제공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는, 지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지만 최소 예상 참석인원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PCT-SAFE 사용을 중단한 관청들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수수료)

BY 벨라루스 (수수료)

IS 아이슬란드 (수수료)

MC 모나코 (수리관청의 기능)

NL 네덜란드 (전자출원)

NZ 뉴질랜드 (주소,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통신수단, 서류 우편발송의 증거, 임시 보호(provisional protection) 관련 규정, 수수료, 국내단계 진입의 특별 요건)

OM 오만 (위치, 우편주소)

RS 세르비아 (수수료)

SK 슬로바키아 (통신수단)

UG 우간다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관련 특별 규정)

ZA 남아프리카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인도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 브라질 특허청)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11월 | 2018/11호

향후 국제사무국의 팩스 사용 중단 및 ePCT 시스템 사용으로의 전환

국제사무국(IB)은 현재 팩스를 통한 서류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일 국제사무국의 통신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아날로그 회선 제공을 중단하여, 국제사무국은 불가피하게 FoIP(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한 팩스 전송) 기술을 이용해 왔습니다(*PCT 뉴스레터* 2017/12호 참조). 그런데 이 기술은 송신인에게 전송 성공 메시지가 나타나더라도 실제로는 전송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손실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식재산(IP) 관청은 이미 팩스 전송 허용을 중단했거나, 머지않아 허용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RO),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및/또는 지정 또는 선택 관청으로서의 관청들 및 PCT 제도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특정 비정부기구들(NGO)과 협의하여¹, 국제사무국에서 팩스로 PCT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팩스로 전달사항을 송부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팩스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에 공감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팩스 전송 허용을 중단하면 인터넷 접속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 통신수단이 사라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은, 전자출원 서버 장애 및 인터넷 서비스 부재 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PCT 체약국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사용자들에게 ePCT 시스템 사용으로 전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 국제사무국에서는 적어도 2019년 2월 말까지는 팩스 서비스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팩스 서류 접수가 중단될 정확한 날짜는 2019년 1월 말 전에 공지될 것입니다. 신규 국제출원이나 사후(출원 후) 서류를 포함한 PDF 문서를 WIPO 계정에 로그인 하지 않고도 업로드 할 수 있는 문서 업로드 서비스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서 업로드 서비스는 팩스 서비스와 달리 안전한 서류 전송이 가능하지만 ePCT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추가적 이점이나 확인 기능은 없습니다. 문서 업로드 서비스는 일차적으로 ePCT 시스템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서비스로서 개발되었습니다. 강력한 추가 인증(디지털 인증서 또는 일회성 패스워드)을 제공하는 ePCT를 이용하면 국제사무국 뿐 아니라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다른 참여관청들 어느 곳을 대상으로도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ePCT 도움말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20>

해당 신규 문서 업로드 서비스는 2018년 11월 하반기에 데모 모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품 버전은 2018년 12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¹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45 참조: <http://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45.pdf>

출원인들께서는 이용하시는 모든 관청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청에서 허용하는 통신 형식에 관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의 관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PCT-PPH)

신규 일방향 PCT-PPH 시범사업 프로그램(유라시아 특허청-대한민국)

2019년 1월 1일 새로운 일방향 PCT-PPH 시범사업 프로그램이 유라시아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KIPO)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한국 특허청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견해서나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 제2장)를 작성한 PCT 출원에 기반하여, 유라시아 특허청에서의 지역단계에서 우선 심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심사결과에 기반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상기 PCT-PPH 합의서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eapo.org/pdf/home/international/2018/KIPO_PPH_en_20181004.pdf

PCT 웹사이트 내 PCT-PPH 페이지는 해당 신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2019년 1월 1일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http://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 (DAS)

유럽 특허청(EPO)

유럽 특허청은 2018년 11월 1일부로 기탁관청이자 이용관청으로서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에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유럽 특허청에서 DAS는, 유럽 특허출원과, 지정 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유럽 특허청에서의 유럽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DAS는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유럽 특허청에서는 근시일 내에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DAS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8/10/2018-10.pdf>

국제사무국 휴무일 및 올해 연말 국제공개 일정

2018년 12월-2019년 1월 간 국제사무국의 주말 외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2월 25일(화)
2018년 12월 31일(월)
2019년 1월 1일(화)

따라서 2018년 12월 26일(수)-28일(금) 동안 업무를 제공하고 2019년 1월 2일(수)에 평소와 같이 업무를 재개합니다.

PCT 정보 서비스와 PCT e서비스 헬프데스크 운영 일자와 국제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T 정보 서비스(PCT Information Service)

PCT 정보 서비스는 2018년 12월 24일(월)-2019년 1월 1일(화) 동안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일(수) 오전 9시(중앙유럽표준시(CET))에 운영이 재개됩니다.

단, 휴무기간 중에 PCT 정보 서비스(전화번호: (+ 41-22) 338 83 38)로 전화 주시면, 녹음된 안내 메시지를 통해 급한 용무를 위한 전화번호가 제공될 것입니다. PCT 정보 서비스에서는 국제출원의 출원과 이후 PCT 국제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를 처리합니다(특정 출원과 관련된 문의는 PCT 프로세싱 서비스(PCT Processing Service)에서 담당).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infoline.html>

PCT e서비스 헬프데스크 (PCT eServices Help Desk)

연말 휴무기간 동안의 PCT e서비스 헬프데스크의 운영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12월 25일(화): 휴무
- 2018년 12월 26일(수)부터
2018년 12월 28일(금)까지: 평소대로 운영 (9:00-18:00(CET))
- 2018년 12월 31일(월) 및
2019년 1월 1일(화): 휴무
- 2019년 1월 2일(수) 이후: 평소대로 운영 (9:00-18:00(CET))

PCT e서비스 헬프데스크는 전자적으로 출원을 준비, 제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관련 문의를 처리합니다. 문의 가능 서비스들은 ePCT (<https://pct.wipo.int>), PCT-SAFE (<http://www.wipo.int/pct-safe/en/index.html>) 및 WIPO DAS (<http://www.wipo.int/das/en/>)입니다.

국제공개 일정

다가오는 휴일기간 동안에는 PCT 국제출원 공개 일정에 변동이 없습니다. 평소와 같이 매주 목요일(즉, 2018년 12월 27일 및 2019년 1월 3일)에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의 접수 마감일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각각 2018년 12월 11일(화)와 2019년 12월 18일(화)(CET)).

PCT 정보 업데이트

국제출원료, 조사료, 보충적 조사료 및 취급료 (다수 관청)

2019년 1월 1일부터, 국제출원료, 30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번 항목에 열거된 전자 출원 감면액(해당 시), 조사료, 보충적 조사료 및 취급료의 일부 통화의 증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온 바대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국제사무국은,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에 누락되었던 116E 단락이 다시 삽입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 단락들을 문서 PCT/GL/RO/17 CORR.로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해당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 된 통합본은 2019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PCT 웨비나 신청용 이메일 주소 변경 재공지

지난 PCT 뉴스레터 2018/10호의 "유용한 도움말"에서 기 안내된 바와 같이, PCT에 대한 내부 웨비나 신청 시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가 pct.our@wipo.int에서 pct.training@wipo.int로 변경되었습니다.

pct.training@wipo.int

WIPO 당좌계좌(Current Account) 사용을 위한 새로운 인증 절차

WIPO 당좌계좌 보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인증 절차가 실시되어, 이제 당좌계좌 포탈에 접속하려면 WIPO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증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finance/en/current_account/authentication.html

유용한 도움말

견해서/IPRP 제1장의 번역문

Q: 국제출원을 중국어로 출원하고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중국 특허청(CNIPA)에서 작성한 중국어로 된 견해서도 받았는데, 국제예비심사 청구서는 제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국제출원으로 여러 지정관청에서의 국내단계 조기진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해당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영문 번역문을 받게 될지, 그렇다면 언제 받게 됩니까?

A: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될 예정이 없으면, 국제사무국에서 PCT 규칙 44의2.1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PCT 제1장)"란 제목으로 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제사무국은 해당 보고서를 각 지정관청에 송부하는데(PCT 규칙 93의2.1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되기 전에는 송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지정관청에 국내단계 조기진입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PCT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PCT 규칙 43의2.1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견해서 사본을 해당 지정관청 또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청에 송부합니다.

PCT 규칙 44의2.3(a)에 따르면 지정국은, IPRP 제1장이 자국 국내관청의 공식언어 또는 공식언어 중 하나의 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영문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에 대해 작성된 견해서가 중국어로 되어 있으므로, 중국어가 공식언어가 아닌 지정관청에서 영문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문이 요구되면, 해당 지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의해 또는 국제사무국의 책임 하에 번역문이 작성됩니다(PCT 규칙44의2.3(b)). 이러한 번역 서비스의 비용은 국제출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견해서의 영문 번역을 위해 국제사무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IPRP 제1장 번역문 사본은, 국제사무국이 다른 언어로 작성된 그 원본을 해당 지정관청에 송부할 때, 즉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관청과 출원인 당사자에게 함께 송부됩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PCT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관청(들)에 국내단계 조기 진입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해당 지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견해서는 국제사무국에 의해 또는 국제사무국의 책임 하에 영문으로 번역됩니다(PCT 규칙 44의2.3(d)).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견해서의 조기 번역을 요청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국제사무국은 번역 요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관청(들)에 번역문 사본을 송부하며(PCT 규칙 44의2.3(d)), 출원인도 이때 번역문 사본을 서식 PCT/IB/310(“송부된 서류에 관한 통지(Notification concerning documents transmitted)”)과 함께 송부 받습니다.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나 견해서 번역문에 관한 정보는 PCT 규칙 72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코스타리카 특허청(Registry of Industrial Property), 곧 국제출원을 전자적 형식으로도 접수 및 처리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PCT-PPH)

신규 양방향 PCT PPH 시범사업 프로그램(칠레-미국)

우간다 등록서비스 관할국(URSB), 수리관청으로서의 업무 시작

PCT 정보 업데이트

BH 바레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BY 벨라루스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수수료)

CR 코스타리카 (이메일 주소, 전자출원, 수수료,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DO 도미니카 공화국 (필요한 제출 부수, 수수료)

EA 유라시아 특허청 (수수료)

LT 리투아니아 (인터넷 주소)

MD 몰도바 (전화번호)

MT 몰타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번호)

NZ 뉴질랜드 (통신수단, 대리인의 역할 수행 가능자,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에 관한 특별규정)

PE 페루 (수수료)

SK 슬로바키아 (우편주소)

UG 우간다 (수리관청의 기능)

VN 베트남 (관청명,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유럽 변리사 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을 위한 자료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12월 | 2018/12호

국제사무국,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 출시 및 팩스 서비스 중단 시점 연기

지난 PCT 뉴스레터 2018/11호에 안내된 내용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국제사무국에서 향후 팩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과 관련하여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contingency upload service)"라는 이름의 새로운 문서 업로드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WIPO계정으로 로그인 하지 않고도 신규 국제출원 및/또는 사후(출원 후) 서류를 포함한 PDF 문서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팩스와 달리 안전한 서류 전송이 가능하지만, ePCT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추가적 이점이나 확인 기능은 없습니다. 강력한 추가 인증(디지털 인증서나 일회성 패스워드)을 제공하는 ePCT를 이용하면 국제사무국 뿐 아니라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다른 참여관청들 어느 곳을 대상으로도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업로드 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출원인/대리인이 국제사무국에 문서를 급히 제출해야 하고 ePCT 시스템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출원인/대리인이 아직 ePCT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비상 대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ePCT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면,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의 바로가기 링크가 ePCT 메인 페이지에 제공됩니다. 그러나 출원인과 대리인은 가급적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보다 ePCT를 사용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는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

문서를 업로드하기 전에 먼저 인증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서비스 접속을 위한 링크를 받아야 합니다. 문서 업로드 후에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문서 접수 확인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현재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의 데모 버전이 **테스트만을 목적으로** 아래에서 제공 중입니다.

<https://pctdemo.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

아래 PCT 온라인서비스 도움말 페이지에 제공된 테스트용 국제출원 번호 샘플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010

출원인이 ePCT 이용을 시작하기까지, 또는 적어도 새로 출시된 문서 업로드 서비스에 친숙해지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국제사무국은 팩스 서비스 중단을 적어도 2019년 6월 말까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전에 공지된 내용은 국제사무국에서 적어도 2019년 2월 말까지 팩스 서비스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음). 이에 따라, 팩스와 문서 업로드 서비스 두 가지 문서 제출 방식도 적어도 2019년 6월 말까지 병행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ePCT 업데이트

ePCT 시스템 신규 버전(버전 4.4)이 2018년 12월 5일 출시되었으며, 신규 기능 중 일부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을 위한 ePCT

새로 추가된 기능

- 외부 서명 기능
 -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청(USPTO)(RO/US)에 출원을 준비 시 출원서 서식에 서명
 - 출원 시 ePCT를 통해 준비한 PCT 규칙 4.17(iv)에 따른 선언들(발명자 선언)(이에 따라, 발명자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ePCT외에 따로 사본을 준비하고 사본에 서명할 필요가 없음)
 - 출원 시 ePCT를 통해 준비한 위임장
 - 모바일 기기 - "손으로 서명(hand-drawn signature)" 옵션이 추가되어, RO/US에 출원 시 상기 세 가지 경우(텍스트 서명 옵션만 이용 가능)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손가락/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해 서명 가능
- 선택적 기능이 추가되어, 출원언어가 영어가 아닌 공개언어인 신규 출원을 ePCT에서 준비하는 경우 출원인이, 발명의 명칭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명세서 본문 내 특정 키워드나 용어에 대해, 제안된 영문 번역 입력 가능. 단, 국제사무국은 국제공개에 위한 번역문을 준비할 때 해당 제안 영문 번역을 참고하되 꼭 따르지는 않을 수 있음.
- 전용 링크가 추가되어, 도면이 포함된 신규 출원을 ePCT에서 준비할 때, 출원 본문 내 도면 부분을 국제사무국에 처리 및 공개를 위해 제공될 모습과 동일하게 미리보기 가능
- 신규 액션(Action)이 추가되어, 출원 후에 서식PCT/RO/134(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의 표시사항) 작성 및 제출에 사용
- PCT 온라인서비스 도움말 페이지에 전용 링크가 추가되어, ePCT 시스템이 이용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이 로그인 못하는 경우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PDF 문서 업로드 가능. 도움말 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해 ePCT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ePCT 첫 메인 페이지에 업로드 서비스의 바로가기 링크 제공(업로드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앞에 나온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 출시" 단락의 내용 확인).
- PCT 온라인서비스 도움말 페이지에 전용 링크가 추가되어, 국제사무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관청 프로필 정보와 관청 휴무일, PCT 기간 계산기 등의, ePCT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여러 업무적 확인 기능의 토대가 되는 참고 자료들 검색 가능.

RO/US에 출원을 준비하는 출원인과 관계된 다른 변경사항을 포함한, 상기된 기능과 기타 상기되지 않은 신규 기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출원인을 위한 ePCT 신규 사항(What's new in ePCT for applicants)"을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008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국제기관을 위한 ePCT

관청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관청과 관계된 기능과 개선사항들이 몇 가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국내단계 진입 자료 업로드 기능이 드롭다운 메뉴에 추가되어, 해당 자료가 EDI(전자데이터교환)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관청의 사용자들이 자료를 자동적으로 업로드 할 수 있음.
- 관청을 위한 새로운 ePCT 액션이 생성되어, 당사자의 명칭 및 주소와 관련된 직권정정의 처리가 텍스트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직권정정 처리의 적시성 및 정확성 향상.
- 공개기한이 지난 후에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 공개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IPC 기호 관리 기능들 추가.
- ISA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을 위한 ePCT 액션이 개선되어, 국제조사기관(ISA)에서 추가수수료 및 해당 시 이의신청료의 납부통지(PCT/ISA/206)를 이미 송부한 경우, 해당 서식에 기전달된 내용을 해당되는 경우 재사용 할 수 있음.

상기된 기능 및 다른 신규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과 관청을 위한 ePCT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 내용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서 "기관 및 관청을 위한 ePCT(ePCT for Authorities and Offices)"를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pct/en/epct/pdf/ePCT_Offices_v4.4_Whats_New_20181130.pdf

출원인 및 관청을 위한 ePCT의 신규사항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pct.eservices@wipo.int

전화: (+ 41-22) 338 9523

헬프데스크 직원이 대기중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온라인 채팅을 이용하십시오.

<https://pct.eservices.wipo.int/direct.aspx?T=EN&UG=4&N=769>

PCT-SAFE 업데이트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2019년 1월 1일, 버전 3.51.086.262) 이 출시되어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

해당 PCT-SAFE 신규 버전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상기 웹페이지에 있는 "출시 정보(Release notes)"와 "신규 사항(What's new)"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국제사무국 휴무일

PCT 규칙 80.5에 따른 기간의 계산상,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제사무국의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9일

2019년 4월 22일

2019년 5월 30일

2019년 6월 10일

2019년 9월 5일

2019년 12월 25일

2019년 12월 31일

상기된 일자들은 국제사무국에만 해당되며 국내 또는 지역관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관청들의 2019년 휴무일은 아래 PCT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pct/dc/closeddates/faces/page/index.xhtml

PCT 정보 업데이트

AE 아랍에미리트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아랍에미리트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 국민과 거주민이 2019년 1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 호주 특허청과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이어 한국 특허청을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IB)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오스트리아 특허청)

2019년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 특허청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EUR로 납부되는 금액과 CHF, KRW, SGD, USD 및 ZAR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수수료표 I(b)에 나온 바와 같이 변경됩니다. 또한 이날부터 아래의 납부 수수료 금액도 변경됩니다.

추가조사료:..... EUR 1,775

상기 변동사항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T, BR 및 EP) 업데이트)

협력심사 시범사업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호에서는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는 IP5 관청들¹이 출원인의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모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IP5 참여관청은 첫 해에(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심기관으로서 약 50건의 국제출원을, 두 번째 해에(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와 유사한 양의 국제출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여관청 소식

유럽 특허청(EPO)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9호에 공지된 바와 같이, 유럽 특허청에서는 올해 해당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40건이 넘는 영어로 된 국제출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된 국제출원을 10건 가량 수리하여 올해 할당량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주심기관으로서 2019년 1월 1일부로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출원되는 국제출원을 수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출원이 시범사업을 위해 잠정적으로 수리되면 해당 출원의 영문 번역이 잠정적 수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유럽 특허청 공식 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PO) 2018/11호를 참고하십시오.

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8/11/2018-11.pdf

중국 특허청(CNIPA)

중국 특허청은 40건이 넘는 영어로 된 출원을 수리하여 더 이상의 영어로 된 출원은 당분간 수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초부터 중국어로 된 출원을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cnipa.gov.cn/ztlz/zlscgslpphhl/csexm/1133411.htm (중국어)

미국 특허청(USPTO)

미국 특허청도 첫 해 출원 수리 50건의 목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각 참여관청이 현재까지 수리한 출원 건수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PCTCollaborativeSearch.xhtml>

협력심사 시범사업 관련 추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filing/cse.html

¹ 중국 특허청(CNIPA),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및 미국 특허청(USPTO)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한 주의사항

신규 납부 요청서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지 않았으며 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처리와도 무관한 PCT 출원인 및 대리인 대상 수수료 납부 요청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그간 PCT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번 공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WPTR – World Patent and Trademark Register"에서도 납부 요청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가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요청서의 예시 및 PCT 사용자들이 WIPO에 제보한 여러 다른 요청서 예시와 추가 전반적인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warning/pct_warning.html

PCT 출원인 및 대리인께서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신속하게 모든 PCT 출원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무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CT 조약 제21조제2항(a) 참조). 이러한 국제공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국제공개의 법적 효과에 관한 내용은 PCT 조약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및 대리인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각자의 조직 내 수수료납부 처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납부 요청을 함께 받았을 발명자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요청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제사무국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 41-22) 338 83 38

팩스: (+ 41-22) 338 83 39

이메일: pct.legal@wipo.int

PCT 출원인, 대리인 또는 발명자(PCT 사용자)께서 자국 정부나 소비자 보호 단체를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위의 링크에 나오는 사이트에는 민원제기 시 사용할 제안 문구 및 민원을 접수하는 정부 부처 및 소비자 단체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

2018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영문)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69

이 연례보고서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미생물, 식물품종보호 및 지리적 표시의 출원, 등록 및 유지를 포괄하는 국제 지식재산(IP) 활동에 관한 최신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보고서는 처음으로 창의성이 중시되는 경제 분야(creative economy)를 다루어 다루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 세계 150개 IP 관청들의 자료가 반영된 약 170개 지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특별 주제는 특허소송 활동에 대한 통계적 이해입니다. 여러 국가의 특허소송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종합적이고 비교 가능한 특허소송 자료 수집에 관한 애로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PR/208/826에 나와 있습니다.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8/article_0012.html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2018년 PCT - 연말 업데이트

2018년 12월 11일 방송된 "2018년 PCT - 연말 업데이트(The PCT in 2018 - end of the year update)"란 제목의 웨비나에서는 PCT 40년 역사상 주요 순간들, 2017년 PCT 통계 주요 내용, 그리고 최근 및 향후 PCT 변동사항 및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웨비나에 사용된 파워포인트 자료와 녹화 영상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2019년에도 다양한 PCT 주제의 웨비나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웨비나 소식은 *PCT 뉴스레터*와 위의 링크에 나온 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유용한 도움말

국제출원이 공개되는 시점 알아보기

Q: 몇 주 전에 국제출원을 했는데, 제 출원이 공개되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PCT 조약 제21조제2항(a)에 따라, 국제출원은 보통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바로 공개됩니다. 단, PCT 조약 제21조제2항(b)에 따라, 출원인(또는 출원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해당 기한의 만료 전에 출원을 공개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보다 빨리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의 공개는 통상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이루어지는데, 목요일이 국제사무국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공개일이 *PCT 뉴스레터*에 미리 공지됩니다. PCT 운영 직원들은 국제공개가 정해진 때에 이루어도록 노력하며, 대부분의 경우 국제공개는 예정대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국제출원의 거의 78%가 18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 공개일에 공개되었으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 공개일에 공개되었습니다. 국제출원의 약 0.3% 정도만이 특수한 상황상 출원 공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공개되었는데, 예를 들어, 국가 안보상의 통제로 인해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늦게 송부한 경우, 출원 시 납부해야 하는 PCT 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나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타 절차상 제약이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출원인은 특정 국제출원의 현재 예정된 공개일자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 해당 일자는 출원의 처리 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공개 예정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ePCT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PCT로 국제출원을 출원했다면, ePCT에서 공개 예정일을 조회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ePCT로 공개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ePCT를 통해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eOwner 권한(eOwnership)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WIPO 계정이 없으면 계정을 하나 만들고 해당 계정에 대한 강력한 인증 방법을 최소한 한 가지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PCT 출원에 대한 eOwner 권한 확인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43

ePCT를 통해 국제출원을 조회하면 "일정표(Timeline)" 섹션에서 해당 국제출원의 공개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 출원에 대한 주요 일자들이 요약된 내용을 살펴보고 "공개예정일(Target Pub Date)"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Data)" 섹션에서 하위섹션인 "국제공개(International Publication)"에서도 공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아래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 공개된 출원인 경우 국제공개일 및 국제공개번호. 공개 전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음(Not yet published)"이라고 표시.
- 현 국제공개 예정일
- 조기 공개 신청 여부
- 공개공보 첫 페이지를 미리보기 할 수 있는 링크

국제공개가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 국제공개 예정일"이 곧 공개 예정일인데, 이는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외에, ePCT 알림(notification) 기능을 활성화해 놓은 경우에는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2주 전에 자동적으로 알림 메시지가 이메일 및/또는 ePCT 알림을 통해 출원인에게 전달됩니다(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국제출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ePCT를 사용해서 국제출원의 공개 예정일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ePCT에서 국제출원을 조회할 수 없어도 WIPO에서 해당 국제출원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연락처는 출원인이 해당 출원에 대해 송부받은 서식PCT/IB/301(기록원본의 접수사실 통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출원인의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출원인에게 공개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줍니다(서식PCT/IB/345 사용). 이를 신속하게 전달받으려면 국제사무국이 이메일로 출원인에게 통지사항을 송부할 것을 항시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출원서 서식(서식 PCT/RO/101) 첫 페이지 하단에 있는 해당 박스에 체크하거나 따로 서신을 보내야 함).

PCT 기간 계산기를 사용해서 직접 국제출원의 **대략적인** 공개 예정일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계산기에 국제출원의 우선일만 입력하면 쉽게 PCT에 따른 여러 예정일들을 금방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능한 가장 빠른 국제공개일(earliest potential date for international publication)"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는 첫 목요일로 계산됩니다. PCT 기간 계산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calculator/pct-calculator.html> (한국어)

PCT 기간 계산기는 대략적인 일자를 알아보는 데에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예정된 공개일이 가까워지면 ePCT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WIPO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BH 바레인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국제출원 사본의 제출,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수요건)

BZ 벨리즈 (이메일 주소, 통신수단, 서류 우편발송의 증거)

GE 조지아 (인터넷 주소,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수요건, 수수료)

ID 인도네시아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필요한 사본 수, 수수료)

IS 아이슬란드 (수수료)

JO 요르단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UG 우간다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수요건,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